

연구 | 06-10

# 상속세, 경제적 기회균등 보장하는가?

최 명 근 · 조 경 엽

## 상속세, 경제적 기회균등 보장하는가?

1판1쇄 인쇄/2006년 11월 20일

1판1쇄 발행/2006년 11월 24일

발행처 ·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 · 노성태

편집인 · 노성태

등록번호 · 제318-1982-000003호

(150-7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1 전경련회관

전화(대표)3771-0001 (직통)3771-0057 팩시밀리 785-0270~1

<http://www.keri.org/>

© 한국경제연구원, 2006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3771-0057

---

ISBN 89-8031-410-8

값 6,000원

## 발간사

시장경제체제를 경제의 기본질서로 삼고 있는 나라들을 중심으로 상속과세의 강화를 통해 경제적 기회균등을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속과세를 폐지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다. 캐나다는 1972년, 호주는 1977년, 뉴질랜드는 1992년에 상속과세를 폐지했으며, 미국도 2001년에 유산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증여세는 존속시키는 법안이 통과되는 등 상속과세 폐지는 세계적인 추세로 발전하고 있다. 이는 경제적 국경이 낮아지는 글로벌시대와 세계를 국제적으로 조화시켜 가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비록 상속과세제도가 경제거래의 세계화에 따른 경쟁력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 있지만, 불합리하고 과도하게 높은 부담을 지우는 상속과세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그러한 나라에서는 저축을 감소시키고 투자재원의 축적을 저해하면서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 자본자유화에 편승하여 국부가 국외로 유출, 심지어는 부를 많이 소유한 계층이 국적을 상속과세가 없거나 낮은 나라로 옮길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효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가운데 추구하는 소득분배의 개선은 모든 계층의 후생을 감소시켜 하향평준화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상속과세제도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이유일 것이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상속과세는 IMF관리 경제체제 이후 정부정책기조 변화와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이 어우러지면서 더욱 강화되어 왔다. 현행 최고세율은 50%

에 달하고 있어 OECD 국가들 중 일본 다음으로 높은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강화는 경제의 세계화시대에 있어서 조세제도가 국제적으로 조화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에 역행하는 조세정책이며, 아울러 부의 창출을 주도하는 계층의 창의적 경제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세를 폐지 또는 완화하지는 목소리는 찾기 힘든 상태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상속과세를 가급적 강화하여 그 부담을 무겁게 해야 한다는 국민 정서와 논리가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과학적인 연구가 부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1980년대 후반의 경제적 호황과 더불어 부동산 및 주식의 가격상승으로 인해 잠재적 과세대상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과세가 대기업 또는 상위 1% 계층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일반 대중의 문제로 대두되면서 상속세에 대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따라서 세계화시대에는 조세제도를 국제적으로 조화시켜야 한다는 명제에 유의하면서, 주요 국가들의 상속과세 정책의 변화에 발맞춰 우리의 상속제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제도적 측면에서의 상속과세의 문제점을 살펴봄과 동시에 세대중복모형을 이용하여 상속세가 계층별 후생과 소비, 저축, 투자, GDP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하고 있다. 상속세 인하는 경제적 효율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무상속계층의 후생도 함께 증진시킬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더욱이 경험적으로 인정되는 시점간 대체탄력성 범위 내에서 상속세 인하가 효율성뿐만 아니라 소득분배의 형평성도 함께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반대로 상속세 강화는 경제의 효율성을 악화시켜 상속계층뿐만 아니라 무상속계층의 후생도 함께 악화시키는 하향평준화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강조

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효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가운데 하향평준화 또는 소득재분배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상속과세에 대한 개편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국민정서에 기대어 정치적 논리로 바람직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과학적인 연구에 기초한 건전한 논쟁이 가능할 때 바람직한 상속세 개편이 가능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상속세 인하에 따른 기업의 지배구조 변화, 자본유출, 상속세의 행정 및 순응비용 등 다양한 방향에서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 아무쪼록 본 연구가 상속세제 개편에 미력하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본 연구는 본원의 최명근 초빙연구위원(강남대학교 석좌교수)과 조정엽 선임연구위원에 의해 수행되었다.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값진 조언으로 연구의 완성도를 높여 주신 학계 전문가와 원내 연구위원들 그리고 익명의 심사위원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한다. 또한 연구에 사용된 자료정리에 많은 수고를 한 정영민, 박창현 연구조원과 권수정, 박보희 연구조원에게 감사드린다. 아울러 보고서에 담긴 내용은 저자들의 개인 견해이며, 본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두는 바이다.

2006년 11월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노성태



# 차 례

요 약/13

제1장 서 론/17

제2장 상속과세 존폐논쟁과 주요국의 입법 동향/25

I. 상속세 존폐 논쟁의 개관 / 29

1. 법이론적 논쟁 / 29
2. 부의 집중억제와 관련된 논쟁 / 30
3. 상속세의 도덕적 논쟁 / 32
4. 효율성 논쟁 / 34
5. 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문제 / 39

II. 주요 선진국의 동향 / 41

1. 캐나다의 자본이득과세에 의한 대체 / 41
2. 미국의 유산과세 폐지동향 / 44

제3장 우리나라 상속과세의 현황과 문제점 / 51

I. 과세체계 / 53

II. 납세현황 / 55

III. 상속세율 및 세수의 국제비교 / 60

IV. 우리나라 상속과세의 문제점 / 62

1. 유산과세형의 문제점 / 62
2. 완전포괄주의의 문제점 / 64

3. 현행제도상 비합리적 법조문 / 65

제4장 상속세의 경제적 과급효과 / 75

I. 문헌조사 / 77

1. 적정 상속세에 관한 연구 / 77
2. 상속동기에 관한 연구 / 78
3. 일반균형하의 상속세의 과급경로 / 82

II. 입력 데이터 / 87

III. 분석모형 / 91

1. 가계부문 / 92
2. 생산부문 / 94
3. 정부부문 / 96
4. 항등식 / 96
5. 캘리브레이션 / 97

IV. 분석결과 / 106

1. 생애소비 및 소득에 미치는 효과 / 106
2.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 / 112
3. 사회적 후생에 미치는 효과 / 116
4. 민감도분석 / 119

제5장 결 론 / 129

참고문헌 / 135

영문초록 / 141



## 표 차례

- <표 1> 유산세 및 증여세 세율과 통합세액공제 면세금액 / 46
- <표 2> 증여세 세율(2010년부터 적용) / 47
- <표 3> 상속공제 / 54
- <표 4> 상속·증여 세율 / 54
- <표 5> 상속세 납세 현황 / 55
- <표 6> 연도별 공제금액 / 56
- <표 7> 연도별·종류별 재산가액 / 57
- <표 8> 2004년 등급별 재산가액과 결정세액 / 59
- <표 9> 2004년 등급별 재산가액과 결정세액 비중 / 59
- <표 10> 상속증여세수의 국제비교 / 61
- <표 11> 계층별 소득, 소비, 자산 비중 / 88
- <표 12> 한국의 사회회계행렬(SAM) / 89
- <표 13> 상속세 비과세대상 계층의 SAM / 90
- <표 14> 상속세 과세대상 계층의 SAM / 90
- <표 15> 상속세 인하에 따른 생애소비 및 소득변화 / 108
- <표 16> 상속세 인하에 따른 연평균 사회적 후생증가 / 118
- <표 17> 시점간 대체탄력성 변화에 따른 후생변화 / 123
- <표 18> 소비&여가와 상속의 대체탄력성 변화에 따른 피상속액  
변화 / 124
- <표 19> 상속과 소비&여가 복합재화간 대체탄력성 변화에 따른  
후생변화 / 127

## 그림차례

- <그림 1> 상속증여세 비중(1997)/60
- <그림 2> 상속세의 경제적 파급경로/86
- <그림 3> 계층별 노동생산성 변화/99
- <그림 4> 기준연도 무상속계층의 생애소비 및 소득 경로/104
- <그림 5> 기준연도 상속계층의 생애소비 및 소득 경로/105
- <그림 6> 계층별 노동 및 여가시간/105
- <그림 7> 상속계층의 생애소비 변화/109
- <그림 8> 무상속계층의 소비변화/110
- <그림 9> 상속계층의 근로소득 변화/110
- <그림 10> 무상속계층의 근로소득 변화/110
- <그림 11> 상속계층의 자본소득(저축) 변화/111
- <그림 12> 무상속계층의 자본소득(저축) 변화/111
- <그림 13> 상속계층의 상속변화/111
- <그림 14> 상속계층의 노동시간 변화/112
- <그림 15> 무상속계층의 노동시간 변화/112
- <그림 16> 투자 및 자본스톡 변화/113
- <그림 17> 노동 및 실질임금 변화/114
- <그림 18> 소비변화/114
- <그림 19> GDP 변화/115
- <그림 20> 상속계층의 소비&여가 복합재화 소비변화/115
- <그림 21> 상속계층의 세대별 후생변화/116
- <그림 22> 무상속계층의 후생변화/117

- <그림 23> 시점간 대체탄력성 변화에 따른 상속계층의 생애소비 & 여가 변화 / 120
- <그림 24> 시점간 탄력성 변화에 따른 무상속계층의 생애소비 & 여가 변화 / 121
- <그림 25> 시점간 대체탄력성 변화에 따른 소비변화 / 121
- <그림 26> 시점간 대체탄력성에 따른 자본스톡 변화 / 122
- <그림 27> 시점간 탄력성에 따른 GDP 변화 / 123
- <그림 28> 소비&여가와 상속간의 대체탄력성 변화에 따른 상속 계층의 소비&여가 변화 / 124
- <그림 29> 소비&여가와 상속간의 대체탄력성 변화에 따른 무상 속계층의 소비&여가 변화 / 125
- <그림 30> 소비&여가와 상속간의 대체탄력성 변화에 따른 자본 스톡 변화 / 126
- <그림 31> 소비&여가와 상속간의 대체탄력성 변화에 따른 GDP 변화 / 126



## 요 약

### □ 연구 목적 및 배경

- 상속과세의 강화를 통해 경제적 기회균등을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1970년대 이후 상속과세 폐지가 세계적인 추세로 발전
-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상속과세를 가급적 강화하여 그 부담을 무겁게 해야 한다는 국민정서와 논리가 팽배해 있고 또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과학적인 연구의 부재로 상속세를 폐지 또는 완화하자는 목소리를 찾기 힘든 상태
- 본 연구의 목적은 제도적 측면에서의 상속과세의 문제점을 살펴봄과 동시에 세대중복형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상속세가 경제적 기회균등을 보장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있음.

### □ 상속과세 존폐논쟁

- 찬성론
  - 상속권은 국가가 인정한 실정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국가가 이를 박탈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
  - 상속은 인생의 출발점을 불평등하게 하여 부가 특정집단에게 집중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상속세를 통해 기회균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
- 반대론
  - 개인의 소유권과 상속권은 자연법적인 인간의 권리이지 국

- 가가 시인 · 허용하는 권리가 아니라고 주장
- 상속세는 낭비하고 수준 높은 소비를 즐겼던 사망자에게는 면세하고 자녀에게 부를 넘겨주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저축한 사람들을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제도라 주장
- 상속세는 저축, 투자를 위축시켜 경제적 효율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결국 사회 전반에 걸친 하향평준화를 초래함.

#### □ 주요국의 입법 동향 및 세수비교

- 캐나다는 1972년, 호주는 1977년, 뉴질랜드는 1992년에 상속과세를 폐지했으며, 미국도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유산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증여세는 존속시키는 법안이 통과되었음.
- 미국의 상속 · 증여세 개편 내용
  - 2010년에는 유산세와 세대생략이전세를 폐지하되 증여세는 존속시킴.
  - 존속되는 증여세 세율은 개인소득세세율과 일치시키기로 함.
  -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유산세와 세대생략이전세의 통합세액공제에 의한 면제금액을 점진적으로 증액(1,000,000 → 3,500,000달러)시키고, 최고명목세율은 점진적 · 단계적으로 인하 조정(50 → 45%)
- 총세수입에서 1997년도 상속과세의 세수입 비중이 1%를 넘는 나라는 프랑스 · 일본 · 한국 · 미국을 꼽을 수 있음.

#### □ 우리나라 상속과세 제도의 문제점

- 우리나라의 상속과세는 유산과세형으로 되어 있어 조세논리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부의 분산효과가 미약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 증여과세에 포괄주의를 도입함으로써 과세권자에 제한 없는

- 유추해석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과세기관에 폭넓은 재량적 판단권을 부여하여 이를 남용할 가능성이 높음.
- 다음에서 예시하는 증여과세 등의 규정은 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없는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제도들임.
  - 모든 사람간의 저가양수·고가양도 차익에 대한 증여과세
  - 비상장주식 상장 시세차익에 대한 증여과세
  - 증세 과세 후 개발이익 등에 대한 증여과세
  - 부동산 무상사용수익에 대한 증여과세
  -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 □ 상속세의 경제적 파급효과

- 분석모형: 세대중복형 일반균형모형
- 분석대상 계층: 상속계층과 무상속계층
- 분석결과
  - 상속세 인하는 경제적 효율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무상속 계층의 후생도 함께 증진시킬 수 있음.
  - 상속세를 현행 대비 40% 인하할 경우 GDP는 0.06% 증가하고 상속계층의 후생은 연평균 약 1,378억~1,847억원 증가하며 무상속계층의 후생은 307억~4,837억원 증가하여 총 사회적 후생은 1,685억~6,683억원 증가할 전망
  - 반대로 상속세 강화는 경제의 효율성을 악화시켜 상속계층 뿐만 아니라 무상속계층의 후생도 함께 악화시키는 하향평준화의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됨.
  - 상속세 인상으로 저소득계층의 후생을 증가시키고 소득분배의 형평성을 재고할 수 있는 있는 경우는 오직 대체탄력성이 비정상적으로 클 때 가능할 것으로 분석됨.

## □ 정책제언

- 부동산 및 주식 시장의 호황 등으로 인해 상속과세가 상위 1% 계층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일반국민들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따라서 효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가운데 하향평준화 또는 소득재분배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상속과세에 대한 개편이 요구됨.
- 우리나라는 아직 상속과세 폐지가 야기할 조세 회피로를 봉쇄하는 데 만족할 정도의 소득세제상 자본이득 과세장치를 정비·시행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상속과세제도의 폐지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없음.
  - － 금융실명제 등 경제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사회적 조세 인프라를 완비한 후 상속과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과세로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조세인프라가 구축되기 전까지는 세율인하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상속세과세를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함.
  - － 최고 세율이 50%에 달하는 상속세율을 자본 소득세율 수준으로 인하
  - － 현행 유산과세형을 취득과세형으로 전환
  - － 저가양수·고가양도 차익에 대한 증여과세는 소득세로 대체
  - － 비상장주식 상장 시세차익에 대한 증여과세는 자본이득세로 대체
  - － 증여세 과세 후 개발이익 등에 대한 증여과세는 자본이득세로 대체할 필요성이 있으며, 부동산 무상사용수익은 증여세가 아니라 소득세로 과세



제1장

서 론



효율과 형평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따라서 어떤 정부는 “효율을 희생하여 형평을 추구할 것인가, 형평을 희생하여 효율을 향상시킬 것인가”라는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어떤 선택이 옳은지에 대한 명쾌한 기준은 없다. 이는 그 사회가 처한 시대적 상황과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가치판단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경제학자들은 효율성의 한계비용과 형평성의 한계편익이 일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문제는 비용과 편익을 계량화하는 데 있어 가치판단이 요구되며 이러한 가치판단은 사회·경제·정치적 여건에 따라 나라마다 다르다는 데 있다.<sup>1)</sup>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개발연대를 거치면서 거대한 부를 축적함에 있어서 투명성이 부족했고, 그 축적수단이 부동산의 투기나 정경유착의 산물이라고 보는 사회적 시각이 확산되어 왔다. 이러한 국민적 정서를 등에 업고 출발한 참여정부는 조세를 통해 특정계층에 집중된 부를 공공부문으로 흡수하는 것이 지고의 선인인 것처럼 인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상속증여세의 강화를 들 수 있다.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여 재벌의 편법 증여와 상속을 막고 부의 세습적 집중을 억제함으로써 경제적 기회균등을 강화하겠다는 참여정부의 대선공약은 그간의 대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정서와 부합하면서 정치적으로는 성공을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상속세가 경제적 기회균등을 보장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찾기는 쉽지 않다. 또한 상속세는 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하향평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오히려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강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따라서 시장경제체제를 경제의 기본질서로 삼고 있는 나라들을

---

1) 예를 들어, 한 단위 형평을 얻기 위해 희생해야 할 효율에 대한 한계비용은 개발도상국일수록 높고 선진국일수록 낮은 것이 사실이다.

중심으로 상속과세의 강화를 통해 경제적 기회균등을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속과세를 폐지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다. 캐나다는 1972년, 호주는 1977년, 뉴질랜드는 1992년에 상속과세를 폐지했으며, 미국도 2001년에 유산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증여세는 존속시키는 법안이 통과되는 등 상속과세 폐지는 세계적인 추세로 발전하고 있다. 이는 경제적 국경이 낮아지는 글로벌시대와 세계를 국제적으로 조화시켜 가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비록 상속과세제도가 경제거래의 세계화에 따른 경쟁력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 있지만, 불합리하고 과도하게 높은 부담을 지우는 상속과세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그러한 나라에서는 저축을 감소시키고 투자재원의 축적을 저해하면서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 자본자유화에 편승하여 국부가 국외로 유출, 심지어는 부를 많이 소유한 계층이 국적을 상속과세가 없거나 낮은 나라로 옮길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효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가운데 추구하는 소득분배의 개선은 모든 계층의 후생을 감소시켜 하향평준화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상속과세제도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이유일 것이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상속과세는 IMF관리 경제체제 이후 정부정책기조 변화와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이 어우러지면서 더욱 강화되어 왔다. 현행 최고세율은 50%에 달하고 있어 OECD 국가들 중 일본 다음으로 높은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강화는 경제의 세계화시대에 있어서 조세제도가 국제적으로 조화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에 역행하는 조세정책이며, 아울러 부의 창출을 주도하는 계층의 창의적 경제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세를 폐지 또는

완화하자는 목소리는 찾기 힘든 상태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상속과세를 가급적 강화하여 그 부담을 무겁게 해야 한다는 국민 정서와 논리가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과학적인 연구가 부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1980년대 후반의 경제적 호황과 더불어 부동산 및 주식의 가격상승으로 인해 잠재적 과세대상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과세가 대기업 또는 상위 1% 계층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일반 대중의 문제로 대두되면서 상속세에 대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따라서 세계화시대에는 조세제도를 국제적으로 조화시켜야 한다는 명제에 유의하면서, 주요 국가들의 상속과세 정책의 변화에 발맞춰 우리의 상속제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상속과세의 문제점을 제도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개선 방향을 다룬 연구(최명근(2002), 최명근(2006))는 충분히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상속세가 경제의 효율과 형평성에 미치는 효과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찾기 힘든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도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봄과 동시에 상속세가 계층별 후생과 소비, 저축, 투자, GDP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상속세의 개편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납세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미국의 경우 상속세가 저축, 노동공급, 세수입 변화에 미치는 효과뿐만 아니라 징수에 따른 행정 및 순응비용 등 다양한 방향에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sup>2)</sup> 대부분의 연구가 설문조사 또는 납세자료에 기초하여 통계 및 계량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계층 또는 특정 부문에 초점을 맞춘 부분균형분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

2) 상속세 관련 연구에 대한 자세한 문헌조사는 Gale and Slemrod(2001)에서 찾을 수 있다.

Stiglitz(1978)는 일반균형 틀 내에서 상속세의 경제적 과급효과를 이론적으로 분석하였으며, Laitner(2001)는 세대중복형모형에 기초하여 상속세의 과급효과를 실증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일반균형모형과 부분균형모형에 기초한 연구 모두 상속동기에 대한 가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연구마다 상이한 결과를 보여 주지만 상속세는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줄인다는 공통점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Laitner(2001)가 주장한 바와 같이 상속세는 누진성이 매우 강한 조세이기 때문에 상속세 폐지는 부가 상위계층으로 집중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Slemrod and Yitzhaki(2001), Kaplow(2001) 등 적정 상속세는 형평성의 한계편익과 효율성 상실에 따른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더욱이 행정비용 및 납세순응비용까지를 고려할 때 적정 상속세는 매우 낮아지거나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속세의 경제적 과급효과를 분석한 국내 연구는 찾기 힘든 상태이다. 문형표(1990)는 상속세의 인상은 상속세의 탄력성이 0에 가깝거나 이자율이 매우 높은 비정상적인 상황하에서만 모든 계층의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상속세는 하향평준화 효과만을 가져올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본 연구는 Kaplow(2001), Bernheim et al.(1985), Kotlikoff and Summers(1981), 문형표(1990)와 같이 세대중복형모형을 구축하고 상속세의 경제적 과급효과를 일반균형 틀 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각 세대는 상속계층과 무상속계층으로 구분하고 상속세 인하가 상속계층뿐만 아니라 무상속계층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상속세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상속세의 형평성 효과도 동시에 분석하고자 한다. 상속세는 직접적으로 상속계층의 생애소비와 저축에 영향을 미쳐 경제 전반에 과급효과를 유발하게 된다.

그리고 거시경제여건 변화는 무상속계층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무상속계층의 저축 및 소비의 변화는 다시 상속계층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순환적 파급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계층간·세대간 나아가 거시경제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순환적 파급효과를 고려할 수 있는 세대중복형모형을 구축하고 상속세 인하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2장에서는 지금까지 뜨거운 논쟁이 되고 있는 상속세 폐지론과 존속론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그리고 주요국들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상속과세제도를 간략히 살펴봄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상속세 현황을 살펴보고 상속세율 및 세수입의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상속과세제도의 현주소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상속세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다룬 기존연구에 대한 문헌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합리적인 모형을 수립하고 상속세 폐지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상속세가 경제적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는지와 상속세로 인한 경제적 효율성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에서는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상속과세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제2장

# 상속과세 존폐논쟁과 주요국의 입법 동향



상속과세에 대한 찬반론은 경제학적 관점에서부터 심지어 철학적 정의론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다. 공평을 이념으로 내세우는 견해에서는 부의 세습적 집중을 억제하고 모든 사람의 출발점을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상속과세를 강화하여 부의 상당부분을 공공부문으로 흡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경제효율에 우선순위를 추구하는 견해에서는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는 성실하고 열심히 일해서 부를 축적한 삶의 우등생을 징벌하면서 낭비하는 삶 때문에 부의 축적이 없는 사람을 포상하는 것과 같다고 비난한다. 상속과세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20세기 이후 공평이념을 내세워 상속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가 계속 우위를 점해 왔다. 우리나라도 1970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연대를 거치면서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고, 나아가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상속과세의 강화정책이 계속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부터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상속과세제도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하면서 이를 자본이득세제도로 대체하거나 그 부담을 완화하는 시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sup>3)</sup> 캐나다 1972년, 호주 1977년, 뉴질랜드가 1992년에 상속세를 폐지했으며, 미국도 2001년에 유산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증여세는 존속시키는 법안이 통과되는 등 상속과세 폐지는 세계적인 추세로 발전하고 있다.

아직은 이러한 추세가 세계 각국의 상속과세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이미 진행되어 온 상속과세의 자본이득세 대체 및 상속과세 부담 완화 추세와 서로 어울

---

3) 선진국에서 자본이득과세로 전환이 가능한 이유는 과세인프라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려서 많은 나라들이 상속과세의 완화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본 장에서는 그동안 논의되었던 상속과세에 대한 찬반양론의 내용을 개관하고 주요국의 입법 동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 I. 상속세 존폐 논쟁의 개관

## 1. 법이론적 논쟁

법이론에 근거한 상속세의 찬반론은 상속권이 자연법적인 인간의 권리라는 견해와 국가가 인정한 실정법상의 권리라는 견해 차이에서 발생한다. 상속세의 찬성론자는 재산상속권은 인간의 자연권이 아니고 국가가 인정한 실정법상의 권리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국가는 그가 수여한 재산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sup>4)</sup> 재산상속권의 본질을 이와 같이 인식하게 되면서 상속과 세제도가 재정제도상의 세수입수단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으며, 세율과 누진도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상속세가 발전하였다.

이에 반해 상속세를 반대하는 사람은 재산에 대한 개인의 소유권은 자연권(the Natural Right)이며,<sup>5)</sup> 사망 시에 그가 소유하던 재산소유권을 이전시키는 권리도 개인의 자연권인 것이지, 국가가 창설하거나 국가가 시인·허용하는 권리가 아니라고 보았다. 이

---

4) 영국의 W. Blackstone은 상속제도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즉 “유언에 의한 재산처분(Wills), 상속과 승계권(Rights of Inheritance and Succession)은 모두 시민법 또는 국내법(Municipal Laws)의 창조물(Creatures)이며, 모든 점에서 그러한 법들의 규제를 받는다. 유산상속권은 시민정부의 창조물이다”라고 했다. (Willam J.Shultz, *The Taxation of Inheritance*, Boston: Houghton Mifflin, 1926, pp.170-171)

5) 1976년 버지니아 권리장전은 “재산을 취득·소유하는 것은 행복과 안녕을 추구하고 획득하는 수단을 제공해 줌으로써 생명과 자유를 향유하게 하는 권리”라고 규정하여 소유권을 신성불가침의 권리로 보았고, 1978년 프랑스의 인간 및 시민의 권리선언에서도 인간의 자연권으로서 “자유·소유·안전”을 들고 있다. 이러한 인권사상에 있어서 소유권은 인간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될 권리이며, 재산을 소유할 권리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정권섭, 『토지소유권의 본질에 관한 소고』, 『민법학의 현대적 과제』, 서울: 박영사, 1987, pp.194-195)

는 19세기 상반기에 유럽대륙의 여러 나라와 영국에서 상속과세 제도를 부인하는 이론으로서 주장되었다. 상속·유증 등에 과세하는 것은 사망한 자가 생존했을 때의 의사로 처분한 재산권을 박탈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영국의 공리주의(the Utilitarians) 학자들에 의하면, 상속제도는 가족의 발전과 사회의 번영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 그러한 제도가 없다면 그러한 제도를 발명할 필요가 있는 것이며, 이러한 재산상속에 대해 과세하면 재산상속이라는 탁월한 제도를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2. 부의 집중억제와 관련된 논쟁

상속과세의 근거로 삼는 가장 보편적인 기준은 인간의 출발점 평등의 실현문제, 즉 평등한 출발점이다. 상속이나 증여는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불공정하게 이익을 받게 된다는 데에 관심을 쏟는다. 즉 출생할 때부터 부유한 사람은 생을 즐길 수 있는 기회 또는 그 외의 여러 가지 유익한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상속과세의 지지론자들은 상속으로 받은 이익은 이를 받은 사람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이에 과세하지 아니하면 공평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재산상속이 부유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는 것 외에는 어떤 아무런 능력도 입증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거대한 이익을 부여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상속은 기회균등을 크게 왜곡하고 공정경쟁을 저해하기 때문에 누진적 상속과세를 통해 부의 재분배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 상속세 지지자들의 주장이다.

상속과세의 반대론자들은 상속과세야말로 이타적인 가족들에

게 불공평한 부담을 지우는 제도이며, 상속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교묘한 절세계획을 세울 수 없거나 그렇게 할 의사가 없는 가족들을 징벌하는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같은 양의 부를 보유한 두 개의 가족을 비교할 경우 상속과세는 모든 재산을 가족들 자신을 위해 사용·소비해 버리거나 또는 재산을 모두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가족에 대해서는 이를 부담시키지 아니하며, 다만 그들의 부를 자손에게 남겨 주려고 축적한 가계에 대해서만 무거운 부담을 지운다는 것이다. 무상이전자의 시각에서 보면, 부를 그들 자신의 자손들을 위해 이타적으로 사용하는 가족만을 선별하여 상속과세를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경제적 기회균등의 관점에서 상속세를 찬성하는 견해는 인생의 출발점을 불평등하게 하는 원인으로 부의 무상이전에만 시선을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기회균등은 이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매우 다양하다. 출발점 불평등의 가장 큰 원인은 인적자본의 차이에 있기 때문이다. 이는 주로 유전적인 재능, 생활환경, 그리고 장래의 소득과 기타 유복한 생활기회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자녀교육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다. 광의로 해석하면 인적자본은 세대간에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 중에서 가장 주된 기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인적자본이 자녀의 성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모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런데 사회적 부의 거대한 구성요소이며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로 세대간에 이전됨으로써 부를 산출하고 있는 이러한 인적자본에 대해서는 기이하게도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현재도 인적자본에 과세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과세는 제안도 되지 않고 있다. 소득과세제도하에서는 인적자본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원천을 과세되지 않는 귀속소득에 유사한 것으로 보거나 아니면 아예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sup>6)</sup>

인적자본의 무상이전이든 부의 무상이전이든 이들이 똑같이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행태를 왜곡시킬 것이다. 과세와 관련하여 굳이 그 구분의 근거를 찾는다면 인적자본의 무상이전은 그 수혜자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세수효과의 긍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하고, 반대로 물적자본의 이전은 노동공급을 감소시키는 전형적인 소득효과가 발생하여 세수효과의 부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키게 될 것이다. 평등한 출발점(Equal Starting Points)을 선호하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인적자본의 무상이전은 그 출발점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sup>7)</sup>

### 3. 상속세의 도덕적 논쟁

상속세는 몇 사람 되지 않는 부유한 사람에게만 그 부담이 귀착되고, 조세제도상으로 누진부담을 증가시키며, 거대한 부의 집중을 억제하고, 부자의 자녀들이 부당한 이익을 가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활동분야에서의 기회균등을 도모한다는 도덕성에 그 기초를 두는 것으로서, 공평한 조세라고 간주되어 왔다. 더욱이 사망한 사람이 생존했을 때 재산의 축적과정에서 재산세·소득세 등을 포탈 또는 회피했기 때문에 이를 정산하기 위해서는 재산축적자의 사망시점에 상속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sup>8)</sup>

그러나 상속과세 반대론자들은 사망시점에 과세하는 상속세야

---

6) Kaplow(2000), p.39.

7) Kaplow(2000), p.40.

8) 이와 같은 견해는 회피조세정상설 또는 생존시에 포탈 또는 회피한 조세의 후불이라는 의미에서 사후과세설(the Back Tax Doctrine)이라고도 한다.



말로 비논리적이며, 도덕적으로 가장 혐오스럽다고 주장한다. 또한 도덕성에 기초를 둔 상속세는 오히려 도덕성을 악화시키고 있다. 먼저 사실상의 관점에서 보면 거의 반세기에 가까운 우리의 경험은 사망세를 쉽게 그리고 충분히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 현행 조세제도하에서 자문을 잘 받고 앞으로의 절세계획을 잘 세운 부유한 사람들은 세금을 부담하지 않고 수백만 달러를 그들의 후손들에게 승계시킬 수 있다. 더욱이 사망세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불평등은 개선되지 아니하고 점점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도덕적 관점에서 사망세를 보면, 이는 생존이 끝날 때 남긴 재산에 과세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사망세는 열심히 일해서 절약하여 저축을 많이 한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낭비하고 수준 높은 소비생활을 즐겼던 사망자에 대하여는 면세하고 있는 것이다.

부의 무상이전 과세를 둘러싼 논쟁의 일부는 정책이 갖는 상징적인 요소들과 관련되어 있다. 사람들은 특히 상속된 재산에 의해 부유하게 살고 있는 부자를 질시할 수도 있고, 특히 그들의 자녀를 부패시키고 있는 행태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무거운 부담의 상속과세제도의 시행이야말로 상속과세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된다. 반대로 상속과세는 경제적 성공에 대한 징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는 열심히 일을 해야 하고 그리고 자신의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고 하는 사회규범을 부식시키기 때문에 상속과세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는 것이다.

#### 4. 효율성 논쟁

상속세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상속세는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소사업과 가족이 경영하는 농장을 파탄시키며, 낭비적 행태를 조장하고, 거액의 납세순응비용을 발생시키며, 교묘한 조세회피방법을 유도하고 있다고 말한다. 비효율적이고 불공정하고 복잡한 세금이기 때문에 사망세(Death Tax)는 조세정책의 여러 가지 바람직한 규범을 침해한다. 따라서 상속과세는 자본축적, 임금, 일자리와 경제적 성장을 총체적으로 감소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소규모 사업·농장과 환경을 파괴하고, 낭비적인 가정에 비하여 알뜰한 가정을 불공정하게 취급하며, 막대한 납세순응비용을 발생시키고 교묘한 조세회피 책략을 만들어 내는 변호사라는 군대(an Army of Attorney)가 필요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 (1) 저축에 미치는 효과

상속세는 일반적으로 저축과 노동공급을 줄여 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Shoup(1966)에 따르면 상속과세는 피상속인의 통상적인 소비를 증가시켜 상속과세의 부담액 이상으로 저축을 감소시킬 수 있다. 유산의 무상이전지출을 피상속인의 소비지출과 같다고 전제할 경우, 사망 시의 소비지출에 대하여는 무겁게 과세하고 생존시의 통상적 소비지출에는 가볍게 과세한다고 할 때 사망 시의 피상속인의 소비지출을 생존시의 소비지출로 대체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Beach(2000)는 상속과세가 저축과 투자의 토대를 무너뜨린다고 주장한다.<sup>9)</sup> 사망세는 잠재적 고용기회를 감소시키고, 열심히

---

9) Willam W. Beach, "Time to Eliminate the Costly Death Tax," Executive

일하는 정직한 근로가 보상을 받는다는 기대를 없앨 뿐만 아니라 소비를 조장하고 저축을 저해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득과세에서 말할 수 있는 바를 사망세에 관해서도 경험적으로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부를 축적하면 할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과받게 되고, 반면 소득을 소비하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상속과세는 새로운 생산용 기계에의 투자나 사업확장을 위한 투자 대신에, Colorado에서의 휴가를 더 많이 즐기거나 유명한 화가 Rubens의 그림을 더 사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Gale and Perozek(2001)은 상속세가 저축에 미치는 효과는 상속동기가 무엇이나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사람들이 상속을 하는 이유는 크게 갑작스런 죽음으로 인한 뜻하지 않은 상속(Accidental Bequest), 순수 이타적 동기에 의한 상속(Pure Altruism), 자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상속(Pure Exchange), 상속 자체가 즐겁기 때문에 하는 상속(Joy-of-Giving)으로 분류된다.<sup>10)</sup> 만약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뜻하지 않게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저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상속인의 세후 상속액이 감소하기 때문에 저축이 감소한다. 순수교환 이론에서와 같이 상속이 자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가정할 경우 상속세가 저축에 미치는 효과는 부모의 수요탄력성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자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탄력성이 비탄력적이라면 상속세율이 높아지면 자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저축이 증가한다. 이타적 상속이론하에서 상속세가 저축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불분명하지만 Gale and Perozek(2001)에 따르면

---

Memorandum, The Heritage Foundation, June 8, 2000, p.2

10) 제4장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상속세가 저축을 적어도 감소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2) 투자 및 생산 활동에 미치는 영향

자본시장 접근이 거의 불가능한 가족기업이나 가족농업의 경우에 그 투자수준은 그 투자자 자신의 저축수준에 의존한다. 이와 같이 자본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가족법인 같은 폐쇄회사 등의 기업체는 상속과세로 인한 저축의 감소가 그 성장을 억제할 수 있다. 만약에 상속과세를 폐지한다면 그러한 기업체 등의 투자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된 실증분석 연구로서 Astrachan and Tutterow (1996)를 꼽을 수 있다. 미국 983개의 가족기업을 대상으로 한 이들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60%가 상속세로 인해 기업을 유지하는 것이 크게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대답하였으며, 8%는 기업을 폐쇄할 수밖에 없으며, 33%는 상속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사업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다.<sup>11)</sup> 이와 같은 결과에 근거하여 Astrachan and Tutterow (1996)는 기업농업자, 가족기업 등 중소기업의 기업은 유동성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과도한 상속세는 사업을 청산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의 연구결과 중에서도 상속세가 투자와 생산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를 찾을 수 있다. 개별납세자료를 이용하여 미국의 상속세 개정법(EGTRRA)이 기업농업자와 가족기업의 상속세 부담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CBO의 연구결과도 상속

---

11) Gale and Slemrod(2001)에 따르면 응답자의 대부분이 실제 자신의 상속세 부담액을 모른 상태에서 응답을 하기 때문에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낮을 수 있다고 주장함.

세가 사업의 존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sup>12)</sup> 개정 전 2000년에 상속세를 부담한 기업농업자와 가족기업은 각각 1,659와 485에 달하는데, 그중 상속세를 부담할 만큼의 충분한 유동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기업농업자는 138개에 달하며 가족기업은 164개에 달한다. EGTRRA 개정법에 따라 공제액이 1.5백만 달러로 상승하면 상속세를 부담하는 기업농업자는 300개, 가족기업은 223개로 줄며, 그중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기업농업자와 가족기업은 각각 27개와 82개로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공제액이 3.5백만 달러로 증가하면 상속세를 부담하지 못하는 기업농업자와 가족기업은 13개와 41개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연구가 상속과세를 통해 부를 민간부문으로부터 공공부문으로 이전시키면 생산 활동에 투입되는 자본이 감소해 버린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즉 자산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상속과세를 무겁게 하면 비생산적인 정부의 세수입을 증가시키고, 국민의 생산자본을 희생시키게 된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면서 상속과세에 의한 세부담은 소득에 귀착하는 것이 아니고 축적된 자본에 귀착한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상속과세는 악세(惡稅)이다.<sup>13)</sup>

### (3) 행정 및 납세순응비용의 낭비

상속과세는 그 회피비용과 행정비용 그리고 납세순응비용이 많이 들고, 그 회피가 용이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고 주장되기도 한다. 1970년대부터 Brookings연구소의 연구결과에서는 상속과세

---

12) Congress Budget Office, "Effects of the Federal Estate Tax on Farms and Small Business," 2005

13) Shultz(1926), p.202.

제도에는 그 회피방법이 많다는 뜻에서 이를 임의적 부담인 세금이라고 했다.<sup>14)</sup> 비록 지난 20여 년간에 걸친 세제개혁이 이를 엄청난 모습으로 견고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공격적인 조세회피는 상속과세에서 중대한 문제로 계속 남아 있다.

실지로 그러한 절세 내지 조세회피 비용이 얼마만큼 큰가 하는 문제이다. 대충 따져서도 상속과세법에 순응하기 위한 비용(상속에 대한 절세계획을 위해 작업을 수행하는 회계사, 변호사, 재무계획가 등에 지급하는 비용)이 상속세수에 맞먹을 정도로 막대하다는 것이다.<sup>15)</sup> 즉 상속과세의 납세순응비용이 그 총세수입에 맞먹거나 또는 1998년 기준으로 약 230억 달러에 달한다고 보기도 하고,<sup>16)</sup> 1999년 기준으로 납세순응비용과 행정비용을 합쳐서 1,675억 달러에 이른다고 추정하기도 한다.<sup>17)</sup>

연방사망세는 아마도 이를 납부하고 징수하는 데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세금이라는 것이다. 사망세 수입은 연방세 수입의 약 1%이며, 1994년의 분석에 의하면, 경제적 비효율을 포함한 납세순응비용은 1달러를 징수하는 데 약 65센트에 달한다고도 한다. 경제적 비효율을 제외시키고 상속과세법에 순응하기 위해 납세의 무자가 직접 부담한 비용에 대해서만 검증한 연구에서는 1달러에 31센트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했다.<sup>18)</sup> 이 외에도 납세순응비용과

---

14) George Cooper, *A Voluntary Tax?: New Perspectives on Sophisticated Estate Tax Avoidance*, The Brookings Institution, 1979, p.130.

15) Gale & Slemrod(2000), p.18. 이는 Joint Economic Committee, *The Economics of the Estate Tax*, December 1988의 추계임.

Edward J. McCaffery, "Death to Death Taxes, Part 1: The Economic Case," *Deathtax*([www.deathtax.com/deathtax/deat2htax1.html](http://www.deathtax.com/deathtax/deat2htax1.html)) p.18에서도 이를 인용하고 있음.

16) McCaffery, *Deathtax*, [www.deathtax.com/deat2htax1.html](http://www.deathtax.com/deathtax/deat2htax1.html)

17) Gale & Slemrod(2001), p.36. Charles Davenport and Jay A. Soled, "Enlivening the Death-Tax Death-Talk," *Tax Note*, July 26, 84 special report, pp.591-630.

18) Beach, "Time to Eliminate the Costly Death Tax," Executive Memorandum,

행정비용을 추계한 연구는 많다. 이러한 상속과세 납세순응비용은 그 정확한 추계는 어렵지만 그러한 부담이 상당히 거액인 것은 사실이며, 이것은 사회적 초과부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상속과세 회피 내지 포탈의 문제에 대하여는 그러한 현상을 과세구간(Bracket)의 평균세율에 의해 접근한 연구가 있다. 이는 1997년의 상속과세의 신고서를 기준으로 1998년에 분석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요지의 결론을 맺고 있다.

수직적 공평을 측정하는 방법의 하나로 소득세의 각 과세구간 또는 상속세 과세재산의 각 구간에 따른 평균세율을 비교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 기초를 두고 측정하면 상속과세는 수직적으로 공평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내국세입청(IRS)의 자료에 의하면 총유산액 2천억 달러를 초과하는 사람들의 평균세율이 실제로 총유산액 250만 달러 내지 5백만 달러인 사람들의 평균세율보다 낮게 나타났다.<sup>19)</sup> 이에 대하여 상속과세 폐지론자들은 상속과세의 회피와 포탈 때문이라고 보면서 상속과세가 수직적으로 공평한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존속론자들은 기부금의 공제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발생한다고 해석한다.

## 5. 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문제

피상속인의 유산에 대해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즉 유산의 취득재원은 소득인 바, 소득과세제도하에서는 그 취득자금의 원천인 소득이 저축될

---

The Heritage Foundation, June 8, 2000.

19) Gale & Slemrod(2001), p.39. 이는 Joint Economic Committee, *The Economics of the Estate Tax*, December, 1988의 분석임.

때 이미 소득세가 과세된 것인데 그렇게 축적된 재원으로 취득한 유산이 상속될 때 다시 상속과세를 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것이다. 즉 자본에 대하여 소득세 외에 또 다른 과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축에 대한 연방조세의 한계세율이 68%(이는 40%의 연방 소득세 최고세율과 55%의 사망세 최고세율 그리고 주유산세액공제의 조합으로 계산된 수치이다)에 달하게 된다<sup>20)</sup>는 것도 바로 이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득을 원천으로 하여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상속 재산이 된 것은 상속 또는 증여를 할 때 그 자산의 가치증가분(자본이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족하다는 이론이다.

자산을 취득하여 사망시점까지 보유하는 동안에 자산가치가 증가되지 아니했다면(자본이득이 발생하지 아니했다면) 그러한 자산에 대해 상속과세를 하는 경우 소득과세와 상속과세가 중복되고 있음이 더욱 선명해진다. 이러한 이론이 캐나다, 미국 등이 유산에 대한 상속과세를 폐지하고, 이를 자본이득세로 대체하는 입법의 논거를 제시하고 있다.

---

20) The President's Agenda for Tax Relief

40 상속세, 경제적 기회균등 보장하는가?



## II. 주요 선진국의 동향

### 1. 캐나다의 자본이득과세에 의한 대체

#### (1) 동향의 대강

캐나다의 세제에서는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생전증여와 사망 시의 유산상속 여부를 불문하고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과세하는 제도를 완전히 폐지했다.<sup>21)</sup> 그 대신 증여나 상속에 의해 재산이 무상이전 하는 때에 증여자는 수증자에게, 피상속인은 사망 바로 직전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에게 그 대상자산을 유상 양도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대상자산이 자본자산이면 자본이득을 산정, 이를 소득세의 과세소득에 합산·과세하는 방법으로 과세한다. 즉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자본이득세로 대체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본이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구조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 (2) 자본이득과세의 구조

캐나다의 소득세제에서는 개인의 소득을 그 원천에 따라 4개 유형으로 구분한다. 근로소득·사업소득·자산소득·자본이득이 그것이다. 자산소득은 임대료·이자·배당·로열티 등으로 구성된다. 개인의 과세소득은 4개 유형별로 산정하지만, 각각 산정된 소득은 이를 모두 합산하여 소득세 세율을 적용한다. 그런데 자본이득(1주택의 처분으로 실현된 자본이득은 면세된다)은 그의 75%만을

---

21) Kesti and Balle, "Canada," *European Tax Handbook*, 2000.

과세소득에 합산하는 것이다. 이는 자본이득의 특성인 집중효과(Bunching Effects)를 완화하는 장치이다.

캐나다의 거주자는 내국인이 지배하는 법인의 주식으로서 법정 요건을 갖춘 것의 양도와 농업용 부동산의 양도로 실현된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평생 동안의 누적합산액으로 50만 달러까지는 면세된다. 그리고 주된 주거의 양도로 실현된 자본이득에 대해서도 내국인에게 면세하는 규정이 있다. 연방소득세 세율은 2000. 1. 1. 현재 17% 내지 29%의 3단계 초과누진구조이다. 과세기간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물가연동제(Indexation)를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개인소득에 대해서는 주정부도 소득세를 과세(세율은 주정부마다 다르다)하는바, 이러한 주정부의 모든 부담을 반영하는 최고 한계세율은 최저 43.5% 최고 51.7%에 달한다. 그런데 주정부의 소득과세에서는 자본이득의 경우 그 3분의 2만을 과세소득에 합산하기 때문에 그 실효부담은 이보다 낮아진다.

### (3) 상속 등의 유상처분 의제

캐나다는 증여세와 상속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소득세제상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유상처분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어 피상속인이나 증여자가 보유하는 기간에 발생한 자본이득에 과세하고 있다.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증여한 자는 그 증여한 재산의 공정시장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입한 것으로 의제한다. 따라서 증여한 재산 여하에 따라서는 이러한 의제수입은 증여자로 하여금 그 증여시점에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부모가 100달러에 취득한 주식을 그 주식의 공정시장가격 500달러로 평가되는 시점에 이를 자녀에게 증여했다고 가

정하면, 부모는 그 주식을 자녀에게 500달러에 양도한 것으로 의제한다. 따라서 부모의 자본이득은 400달러(500-100)가 되고, 부모는 300달러(400×75%)의 자본이득이 과세소득에 합산된다. 그리고 자녀들은 그 증여받은 주식에 대해 500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고, 이를 600달러를 받고 양도하면 100달러의 자본이득이 실현되고 그중 75%인 75달러가 과세소득에 합산되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규정은 개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도 적용된다. 사망한 개인은 사망시점 바로 직전에 그가 소유한 모든 재산을 법에 따라 산정(평가)되는 간주수입금액에 의해 처분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이다. 위의 예로 이를 설명하면, 부모가 사망하면서 그의 자녀에게 그 법인의 주식을 주는 것으로 유언을 한 경우 부모는 사망 바로 직전에 그 주식을 500달러에 양도하여 400달러의 자본이득이 발생한 것으로 의제한다. 유언집행자는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망자의 소득세 신고서에 400달러의 75%인 300달러의 자본이득을 포함시키게 되는 것이다. 그 유산인 주식은 자녀가 부모로부터 500달러에 취득한 것으로 의제된다. 즉 자녀가 유산분할을 받을 때 그 주식에 대하여 부모에게 500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이다.

배우자의 일방이 타방의 배우자에게 재산을 무상이전 하는 경우에 그 재산의 공정시장가격 상당액은 무상이전자의 수입으로 의제하지 아니한다. 즉 자본이득과세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 규정은 증여와 상속 양자에 모두 적용된다. 그러므로 배우자간의 상속 또는 증여로 무상이전 되는 재산의 자본이득은 마지막 생존한 배우자가 사망할 때에만 비로소 과세되는 것이다. 사망시점의 의제자본이득과세는 재산의 가격 전체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자산의 가치증분(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는 구조이다.

## 2. 미국의 유산과세 폐지동향

### (1) 개정 경과의 대강

유산세와 증여세의 폐지안(Economic Growth and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 of 2001)에 대한 미국 하원과 상원의 가결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였다.

첫째, 2001년 4월 4일에 하원을 통과한 상속과세 개정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2010년까지 유산세 최고명목세율을 현행 55%에서 점진적으로 39%로 인하한다.
- 유산세, 세대생략이전세(Generation-skipping Transfer Tax)와 증여세는 2011년에 폐지한다.
- 사망 또는 증여로 이전되는 자산에 대한 추후 자본이득 산정상의 취득가액(2001 구법은 Stepped-up Basis)에 대하여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한다. 이는 취득가액 승계제도(Carryover Basis)를 마련한다는 의미이다.

둘째, 2001년 5월 23일에 상원이 가결한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 세율은 점진적으로 인하하되, 2011년에 현행 최고명목세율 55%를 45%로 한다.
- 세율의 인하폭을 줄이는 대신에 통합세액공제액은 현행의 그 금액 67만5천 달러를 2002년에는 100만 달러로 상향조정하고, 그 후에 이를 점진적으로 증액시켜서 2010년에는 400만 달러가 되도록 한다.
- 2011년에 유산세와 세대생략이전세는 폐지한다. 그러나 증여세는 계속 유지하며, 사망에 의해 무상취득한 자산에 대한 추후 자본이득 산정상의 취득가액(현행은 Stepped-up Basis)에

대하여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한다.

## (2) 최종통과와 그 내용의 대강

유산세와 증여세의 점진적 폐지안에 대하여 2001년 5월 25일에 양원합동조세위원회(the Joint Committee on Taxation)는 양원이 각각 의결 차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합의하고, 같은 해 5월 26일 이 합의안은 상하양원을 통과한 것이다.<sup>22)</sup> 같은 해 6월 7일에는 Bush 대통령이 이를 서명, 공포했다.

■ 2010년에는 유산세와 세대생략이전세를 폐지한다. 2010년도 증여세는 폐지하지 아니하고 존속시킨다. 그리고 그 존속되는 증여세 세율은 개인소득세 최고명목세율 35%와 일치시키기로 한다. 그리고 경과규정을 두어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다음 <표 1>과 같이 연차적으로 유산세와 세대생략이전세의 통합세액공제에 의한 면제금액을 점진적으로 증액시키고, 최고명목세율은 점진적·단계적으로 인하 조정한다.

그런데 유산세가 폐지되기 전의 과세기간(2002~2009년)에 있어서 통합세액공제로 증여세가 면제되는 재산의 기준금액은 100만

---

22) "Core of Original Bush Plan Remains Intact Despite Tinkering," *Washingtonpost*, May 26, 2001, p.A01.

Bush의 감세법안이 통과되던 날 유산세 폐지에 대하여 생명보험계의 로비스트인 Phil Anderson은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고 *Washingtonpost*는 보도하고 있다. 즉 유산세 폐지의 불확실성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재무계획가(Financial Planners)는 유산에 대한 조세문제에 직면한 그의 고객에게 아직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할 것이다. 유산세가 완전히 폐지되는 데는 두 번의 대통령선거와 네 번의 의원선거를 해야 한다. 그러므로 새로운 대통령이나 의회는 쉽게 그 폐지정책을 포기할 수 있다."

미국은 4년 임기의 대통령을 선거하고, 2년 임기의 하원의원을 선출하며, 6년 임기의 상원의원은 2년마다 그 3분의 1을 선출한다. 그런데 2001년에 통과된 유산세 폐지는 2010년에 가야 완전히 폐지된다. 그러므로 그동안에 대통령선거가 두 번 있게 되고, 네 번의 의원선거가 있게 되는 것이다.

달러를 한도로 한다. 그리고 유산세가 폐지된 후의 과세를 존속시키는 증여세의 경우에는 개인소득세 최고명목세율과 일치시킨 증여세 세율에 의해 계산된 세액에서, 100만 달러에 그러한 세율을 적용·산정한 금액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한다. 이는 증여세를 존속시키면서 그 면세재산금액을 100만 달러로 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세율은 개인소득세와 같게 하는 것이다.

<표 1> 유산세 및 증여세 세율과 통합세액공제 면세금액

(단위: 달러, %)

연 도	면제되는 금액	최고명목세율
2002년	1,000,000	50
2003년	1,000,000	49
2004년	1,500,000	48
2005년	1,500,000	47
2006년	2,000,000	46
2007년	2,000,000	45
2008년	2,000,000	45
2009년	3,500,000	45
2010년	유산세 폐지	

주: 증여세 세율을 개인소득세 최고세율과 일치시킴.

증여세는 폐지하지 아니하고 유지하되, 최고명목세율은 다음 <표 2>와 같이 개인소득세의 그것과 일치시킨다는 것이다. 이 새로운 세율은 2009년 12월 31일 후에 행한 증여에 대하여 적용하게 된다. 본래 증여세는 상속세에 대한 보완세의 기능을 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통설이다. 그런데 미국의 세계개혁에서는 상속세는 폐지하고 상속세 없는 증여세를 둔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증여를 소득으로 파악해서 이에 소득세를 과세해야 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존속시키는 것은 증여세의 기능이 소득세의 보완세적 기능을 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표 2> 증여세 세율(2010년부터 적용)

(단위: 달러, %)

과세금액구간	세율
10,000 이하	18
10,000 초과 20,000 이하	20
20,000 초과 40,000 이하	22
40,000 초과 60,000 이하	24
60,000 초과 80,000 이하	26
80,000 초과 100,000 이하	28
100,000 초과 150,000 이하	30
150,000 초과 250,000 이하	32
250,000 초과 500,000 이하	34
500,000 초과	35

■ 사망자로부터 무상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인(무상취득자)의 자본이득을 산정할 때 무상이전시점의 공정시장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 현행 규정(Stepped-up Basis)은 유산세 등의 폐지와 더불어 폐지한다.

그 대신에 다음과 같은 수정취득가액승계제도(a Modified Carryover Basis)를 도입한다. 즉 자본이득 계산에 있어서 피상속인

으로부터 무상승계한 재산의 무상취득자의 취득가액은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승계하는 조정취득가액과 사망 당시의 그 재산에 대한 공정시장가격 중 적은 금액으로 하는 것이다. 이는 사망시점까지 피상속인에게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하여 유산의 무상이전을 유상양도로 의제해서 자본이득과세를 하지 않고, 무상취득자가 상속재산을 양도할 때 자본이득과세를 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 유산세가 존속하는 동안 주정부가 과세하는 주유산세(Estate, Inheritance, Legacy, or Succession Taxes) 등의 세액공제의 한도액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2002 현행법상 공제세액의 25% 감소, 즉 현행 공제세액의 75%까지
- 2003 현행법상 공제세액의 50% 감소, 즉 현행 공제세액의 50%까지
- 2004 현행법상 공제세액의 75% 감소, 즉 현행 공제세액의 25%까지

그런데 2005년부터는 주유산세의 세액공제(Credit)제도를 폐지하고, 주정부 등에 실제로 납부한 주유산세액을 피상속인의 총유산가액에서 금액공제(Deduction)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우리 법을 기준으로 보면 주유산세액을 공과금으로 공제하는 것과 같다.

■ 유산세가 존속하는 동안 총유산액에 포함된 국외에 소재하는 상속재산에 대해 외국정부가 과세하여 실지로 외국정부에 납부한 상속과 관련된 조세(Any Estate, Inheritance, Legacy, or Succession Taxes)는 유언집행자의 신청에 의해 총유산가액에서 금액공제(Deduction)를 할 수 있다.

■ 그러면 유산세와 증여세를 모두 폐지하기로 한 하원의 의결 내용과는 달리 상원의 의결 내용대로 증여세를 존속시킨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2000년에 의회를 통과했다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의해 폐기된 법안과 2001년의 법안은 모두 유산세와 증여세를 함께 점진적으로 폐지하면서 사망자 또는 증여자(무상이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간에 발생한 자본이득에 과세하는 방법으로 상속인 또는 수증자(무상취득자)가 무상이전자의 취득가액을 승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특히 생전증여의 경우 증여세를 폐지하면 다음과 같은 조세회피가 일어난다고 지적되었던 것이다.

자본이득세 회피를 막기 위해서는 유산세는 폐지하되 증여세는 존속시켜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하는 것이다. 즉 이는 위에서 제기된 조세회피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받아들인 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상원이 증여세는 계속 유지하며, 사망에 의해 무상 취득한 자산에 대한 추후 자본이득 산정상의 취득가액(현행은 Stepped-up Basis)에 대하여는 새로운 규정(Carry-over Basis)을 마련하자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할 것이다.

둘째, 유산세는 폐지하고 증여세만 부과하는 구조하에서는 개인들이 생존기간에 증여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사망을 계기로 아무런 조세부담도 하지 아니하고 부를 다음 세대로 이전시키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상속세 부담보다 증여세 부담이 적어지도록 설계하고 있는 영국의 입법례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발생된다. 따라서 유산의 동결효과가 발생하여 젊은 세대가 조기에 부모 등의 유산을 승계 받아 활력 있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단점이 있게 되는 것이다.

셋째, 만약에 캐나다의 경우처럼 무상이전 시점에 자본이득이 실현된 것으로 의제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한다면 증여세 폐지가 조세회피를 촉발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런데 경제성장과 감세조정법은 상속과세를 자본이득세로 대체하되, 무상이전자의

취득가액을 무상취득자가 승계하는 방법으로 무상취득자의 자본이득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위의 사례에서처럼 증여세의 폐지가 자본이득세의 회피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만약에 캐나다의 입법례처럼 상속이나 증여가 발생할 때 무상이전자가 유산을 보유하는 동안에 발생한 자본이득이 실현된 것으로 의제하여 자본이득세를 과세하는 경우는 세제의 간편성에 비추어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할 경우 상속과세제도하에서는 각종 공제로 세부담이 없게 될 계층까지도 자본이득세를 부담하게 될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제3장

우리나라 상속과세의 현황과  
문제점



## I. 과세체계

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체계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속재산가액에서 <표 3>에 나타난 각종 공제를 차감한 후에 상속과세표준을 구한 후 <표 4>에 나타난 과세구간별 세율을 곱하면 결정세액이 도출된다. 상속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 간주상속재산을 합하고, 비과세 재산과 과세가액불산입 재산을 차감하여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한다.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등을 차감하고 10년 이내의 사전증여재산액(재차증여가액)을 합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한다. 이에 <표 3>에 나타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이나 일괄공제 중의 하나와 기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금융재산공제, 화재손실공제 등을 차감하면 상속세의 과세표준이 결정된다.

상속세 과세표준이 결정되면 <표 4>에 나타난 과세구간별 상속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을 산정하게 된다. 이때 세대생략 상속의 경우 30%의 할증세액을 추가하게 된다.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를 차감하고 가산세를 가산하여 상속세 결정세액이 결정된다. 이에 연부연납, 물납 등을 차감하여 고지세액을 결정한다.

<표 4>에서 보듯이 1996년까지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구간이 상이하여 증여가 상속보다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나, 1997년부터는 과세구간과 세율이 단일화되었다. 2000년부터 최고세율구간이 5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하향조정되어 상속세가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3> 상속공제

구분	항목	공제내용	한도
① 기초공제		2억원	
② 인적공제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자공제	법정상속지분 내 실제상속 받은 가액 1인당 3,000만원 500만원 x 20세까지의 잔여연수 60세 이상 1인당 3,000만원 500만원 x 75세까지의 잔여연수	최소 5억, 30억 한도
③ 일괄공제		5억	
④ 기업상속공제		기업상속재산가액	1억원
⑤ 영농상속공제		영농상속재산가액	2억원
⑥ 금융재산공제	순금융재산가액이 -2,000만원 이하 -2,000만원 ~1억원 -1억원 초과	순금융재산=(금융재산-금융부채) 잔액 2,000만원 순금융재산가액 x 20%	2억원
⑦ 재해손실공제		신고기한 이내에 화재, 폭발,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멸실, 훼손된 경우 당해 손실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주: ① 기초공제 + ② 인적공제(배우자공제는 제외), ③ 일괄공제 중 선택가능  
자료: 재정경제부, 『조세개요』, 2003. 6

<표 4> 상속·증여 세율

'96. 12. 31 이전	'97. 1. 1~'99. 12. 31	2000. 1. 1 이후
<상속세> · 5천만원 이하 10% · 2억5천만원 이하 20% · 5억5천만원 이하 30% · 5억5천만원 초과 40% <증여세> · 2천만원 이하 10% · 1억5천만원 이하 20% · 3억원 이하 30% · 3억원 초과 40%	* 과세구간 및 세율 단일화 · 1억원 이하 10% · 5억원 이하 20% · 10억원 이하 30% · 50억원 이하 40% · 50억원 초과 50%	· 1억원 이하 10% · 5억원 이하 20% · 10억원 이하 30% · 30억원 이하 40% · 30억원 초과 50%

주: 세대를 건너뛰어 조부가 손자에게 상속·증여 시 30% 할증과세  
자료: 재정경제부, 『조세개요』, 2002. 5.

## II. 납세현황

<표 5>에 나타난 과세대상인원은 2004년에 258,021명에 달하나 그중 0.7%에 달하는 1,808명이 상속세를 납부하였다. 총조세에서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 미만으로 2000년에 0.45%, 2003년에 0.31%, 2004년에 0.63%에 달한다. 과세표준을 결정세액으로 나눈 유효세율은 2000년에 27.5%를 기록하였으나 완전포괄주의가 시행되는 2003년부터는 유효세율이 30%대로 증가하여 2004년에는 33.2%를 기록하였다. 공제금액은 2000년에 1조5,480억원으로 재산가액의 45%에 달하였으며, 2004년에는 1조9,160억원으로 재산가액의 40%에 달한다.

<표 5> 상속세 납세 현황

(단위: 명, 십억원, %)

	2000	2001	2002	2003	2004	평균
총조세	113,535	122,458	135,521	147,797	151,997	134,262
과세대상인원	211,619	219,264	241,193	227,209	258,021	231,461
납세인원	1,389	1,982	1,661	1,720	1,808	1,712
재산가액	3,413	3,081	2,994	3,128	4,792	3,482
공제금액	1,548	1,647	1,227	1,586	1,916	1,585
과세표준	1,865	1,434	1,767	1,542	2,876	1,897
결정세액	514	401	474	462	954	561
유효세율	27.5	28.0	26.8	30.0	33.2	29.6
A	0.66	0.90	0.69	0.76	0.70	0.74
B	0.45	0.33	0.35	0.31	0.63	0.42

주: A = (납세인원/과세대상인원) × 100

B = (상속세/총조세) × 100

<표 6>에서 보듯이 배우자공제가 40% 내외를 기록하고 있으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비율은 1~5% 범위에 있다. 공제의 50% 이상은 일괄공제를 포함한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금융재산공제 등 기타공제가 차지하고 있다.

<표 6> 연도별 공제금액

(단위: 백만원)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인적공제	기타공제	합계
2000	33,298 (2.2)	616,344 (39.8)	27,629 (1.8)	870,888 (56.3)	1,548,159 (100.0)
2001	77,504 (4.7)	706,592 (42.9)	34,070 (2.1)	829,010 (50.3)	1,647,176 (100.0)
2002	55,100 (4.5)	532,454 (43.4)	35,662 (2.1)	603,284 (50.3)	1,226,500 (100.0)
2003	55,932 (3.5)	606,305 (38.2)	26,539 (1.7)	897,372 (49.2)	1,586,148 (100.0)
2004	47,125 (2.5)	742,401 (38.7)	22,424 (1.2)	1,104,318 (57.6)	1,916,268 (100.0)
평균	53,792 (3.4)	640,819 (40.4)	29,265 (1.8)	860,974 (54.3)	1,584,850 (100.0)

주: ( ) 안의 수치는 총공제액에서 각 공제의 비중을 의미함.

<표 7>은 종류별 재산가액을 보여 주고 있다. 2003년까지는 상속재산 중 토지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2004년에는 38.6%로 금융자산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기록하였다. 금융자산은 2000년에 23.9%, 2001년 20.0%, 2002년에 26.9%, 2003년에 28.7% 이던 것이 2004년에는 40.2%로 그 비중이 대폭 증가하였다. 건물과 기타재산이 각각 10%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재차증여는 2000년에 4,348억원, 2004년에 5,816억원으로 상속재산가액의 약 14%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표 7> 연도별 · 종류별 재산가액

(단위: 억원)

	2000		2001		2002		2003		2004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토지	17,722	59.5	16,261	59.4	13,603	52.9	14,024	50.5	16,248	38.6
건물	3,018	10.1	2,935	10.7	2,885	11.2	3,263	11.7	4,156	9.9
금융자산	7,111	23.9	5,483	20.0	6,916	26.9	7,969	28.7	16,932	40.2
기타재산	1,936	6.5	2,701	9.9	2,295	9.0	2,518	9.1	4,767	11.3
합계	29,786	100.0	27,380	100.0	25,700	100.0	27,774	100.0	42,103	100.0
채차증여	4,348	-	3,432	-	4,236	-	3,506	-	5,816	-
총계	34,134	-	30,812	-	29,936	-	31,280	-	47,919	-
공제금액	15,482	-	16,472	-	12,265	-	15,861	-	19,163	-
과세표준	18,653	-	14,340	-	17,671	-	15,418	-	28,757	-

<표 8>과 <표 9>는 2004년도의 등급별 재산가액과 결정세액을 보여 주고 있다. 피상속인의 98.4%가 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이며 그중 86.8%가 재산가액이 1억원 이하이다. 재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 되는 피상속인은 1.6%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5억원 이상의 상속가액을 가진 피상속인은 일인당 상속액이 높아 총재산가액의 42.8%를 상속하고 있다. 피상속인 258,021명 중 과세대상이 되는 인원은 1,808명이며 나머지 256,213명은 과세미달자로 구분된다. 과세미달자의 대부분은 10억원 이하의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에 나타나고 있으며 등급이 10억~20억원 사이의 피상속인 892명 중 231명이 비과세대상에 속한다. 20억~30억원 구간에서 18명, 30~50억원 구간에서 2명이 비과세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다.

<표 3>에서 살펴보았듯이 기초공제 & 인적공제와 일괄공제 5억원 중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표 8>에서 보듯이 과세대상이 되는 피상속인 1,808명 중 231명은 1억원 이하의 재산가액을 상속하였으며, 125명이 1억~3억원, 63명이 3억~5억원 이하의 재산가액을 상속하였다. 이는 국외거주자의 상속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재차증여 등 행정적 편의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sup>23)</sup> 상속재산등급이 5억~10억원 사이의 속하는 피상속인은 과세대상인원의 1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결정세액은 약 78억7천만원으로 재산가액에서 차지하는 평균세율은 3.8%에 달한다. 과세대상이 인원 중 36.5%가 10억~20억원 재산가액등급에 속하고 있다. 이들은 납부한 총상속세는 474억8천만원으로 재산가액에서 차지하는 세율은 4.9%에 달한다.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할 때 평균세율이 재산가액의 증가와 더불어 증가하고 있어 상속세가 강한 누진적 세수구조를 가진 세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재산가액이 100억~500억원에 달하는 과세인원은 33명에 그치고 있으나 총결정세액의 19.1%를 납부하고 있다. 그리고 재산가액 대비 평균세율은 29%에 달한다. 500억원 이상의 재산을 상속하는 피상속인은 9명으로 전체 과세대상인원 중 0.5%에 그치고 있으나 이들이 28%의 상속세를 납부하고 있다. 이를 상속재산가액으로 나누어 평균세율을 구하면 48.5%에 달한다. 각종 공제액을 제외한 등급별 과세표준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 보다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등급별 평균세율을 기초로 분석할 수는 없지만 상속세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매우 강한 누진적 세수구조를 가진 세목으로 분류할 수 있다.

---

23) 이는 국세청 상속세 통계 담당자의 설명이다. 표에서 보듯이 재산가액에서 차지하는 결정세액이 매우 낮아 뒤에서 분석할 실증분석모형에서는 5억원 이하의 재산가액이 납부하는 상속세는 무시하기로 한다.

<표 8> 2004년 등급별 재산가액과 결정세액

(단위: 명, 백만원, %)

	합계		과세				과세미달	
	인원	재산가액	인원	재산가액	총결정 세액	(결정세액/ 재산가액) x100	인원	재산가액
합 계	258,021	15,668,786	1,808	4,791,927	953,973	19.9	256,213	10,876,859
1억원 이하	223,981	2,925,745	231	12,591	54	0.4	223,750	2,913,154
1억~3억원	25,258	4,209,142	125	22,902	440	1.9	25,133	4,186,240
3억~5억원	4,742	1,827,002	63	25,428	631	2.5	4,679	1,801,574
5억~10억원	2,666	1,847,670	266	205,959	7,869	3.8	2,400	1,641,711
10억~20억원	892	1,246,570	661	961,593	47,481	4.9	231	284,977
20억~30억원	235	581,981	217	539,701	60,124	11.1	18	42,280
30억~50억원	127	487,517	125	480,594	70,109	14.6	2	6,923
50억~100억원	78	570,440	78	570,440	122,191	21.4	-	-
100억~500억원	33	629,613	33	629,613	182,306	29.0	-	-
500억원 이상	9	1,343,106	9	1,343,106	462,768	34.5	-	-

<표 9> 2004년 등급별 재산가액과 결정세액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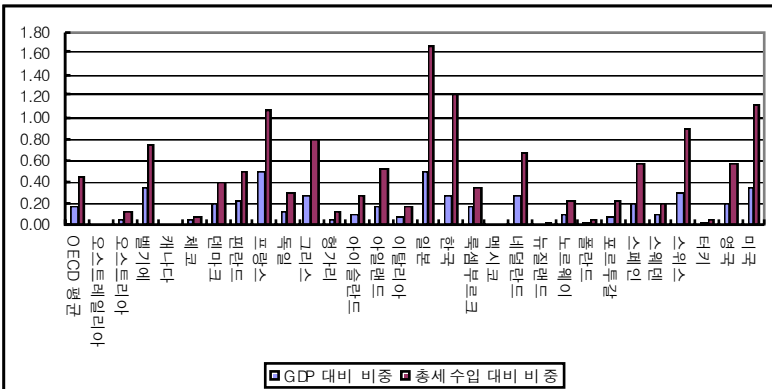
(단위: %)

	합계		과세			과세미달	
	인원	재산가액	인원	재산가액	총결정세액	인원	재산가액
합 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억원 이하	86.81	18.67	12.78	0.26	0.01	87.33	26.78
1억~3억원	9.79	26.86	6.91	0.48	0.05	9.81	38.49
3억~5억원	1.84	11.66	3.48	0.53	0.07	1.83	16.56
5억~10억원	1.03	11.79	14.71	4.30	0.82	0.94	15.09
10억~20억원	0.35	7.96	36.56	20.07	4.98	0.09	2.62
20억~30억원	0.09	3.71	12.00	11.26	6.30	0.01	0.39
30억~50억원	0.05	3.11	6.91	10.03	7.35	0.00	0.06
50억~100억원	0.03	3.64	4.31	11.90	12.81	-	-
100억~500억원	0.01	4.02	1.83	13.14	19.11	-	-
500억원 이상	0.003	8.57	0.50	28.03	48.51	-	-

### III. 상속세율 및 세수의 국제비교

<그림 1>과 <표 10>에서 보듯이 부의 무상이전에 대해 상속과 세제도를 유지·운용하고 있는 주요 국가에 있어서도 그 세수입이 총세수입 또는 GDP에서 점유하는 비중은 매우 작다는 것이다. 총세수입에서 상속과세의 세수입 비중이 1%를 넘는 나라는 프랑스·일본·한국과 미국뿐이다. 미국은 상속과세 수입 비중이 높은 국가에 속하기는 하지만 총세수입에서 점하는 비중은 1% 남짓한데, 그렇게 얼마 되지 아니하는 세수를 얻기 위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속과세를 과연 계속 유지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을 던지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상속과세를 폐지함으로써 발생하는 세입의 결핍은 경제의 규모가 발전적으로 커지는 경우 그로 인해 증가하는 세수입에 의해 충분히 이를 메울 수 있다고 보는 전제를 깔고 있다.

<그림 1> 상속증여세 비중(1997)



자료: W.G. Gale and J.B. Slemrod, *Rethinking the Estate and Gift Tax Overview*, 2001.

<표 10> 상속증여세수의 국제비교

(단위: %)

	GDP 대비 비중	총세수입 대비 비중
OECD 평균	0.16	0.44
오스트레일리아	0.00	0.00
오스트리아	0.05	0.11
벨기에	0.34	0.75
캐나다	0.00	0.00
체코	0.03	0.07
덴마크	0.19	0.39
핀란드	0.23	0.50
프랑스	0.49	1.08
독일	0.11	0.30
그리스	0.27	0.79
헝가리	0.04	0.11
아이슬란드	0.09	0.28
아일랜드	0.17	0.52
이탈리아	0.07	0.16
일본	0.48	1.66
한국	0.26	1.20
룩셈부르크	0.16	0.33
멕시코	0.00	0.00
네덜란드	0.28	0.67
뉴질랜드	0.00	0.01
노르웨이	0.10	0.22
폴란드	0.02	0.05
포르투갈	0.08	0.23
스페인	0.19	0.57
스웨덴	0.10	0.19
스위스	0.30	0.88
터키	0.01	0.04
영국	0.20	0.56
미국	0.33	1.12

자료: W.G. Gale and J.B. Slemrod, *Rethinking the Estate and Gift Tax: Overview*, 2001.

## IV. 우리나라 상속과세의 문제점

### 1. 유산과세형의 문제점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유산과세형 상속과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sup>24)</sup> 이 제도는 일제시대부터 시행해 온 상속과세유형이다. 일본도 제2차 세계대전 후 취득과세형 상속과세제도로 바꾸었고, 현재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취득과세형을 시행하고 있다.<sup>25)</sup> 유산과세형을 고수하던 미국은 2001년에 상속과세제도를 폐지하는 것으로 입법했고, 유산과세형의 캐나다는 몇 십여 년 전에 이미 이를 폐지하고 자본이득과세로 대체했다. 호주와 뉴질랜드

---

24) 유산과세형 상속세는 사망자가 남긴 유산총액의 이전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무상이전자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유산을 무상취득하는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공동상속의 경우에도 이를 각자의 상속분으로 분할하기 전의 유산총액을 과세베이스(Tax Base)로 하여 이에 누진구조의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즉 피상속인(Decedent, Donor, Devisor, Legator or Transferor Base) 기준의 물적과세단위로 상속과세를 하는 방법이다. 과세베이스를 피상속인 기준으로 계산하는 이 과세방법은 통상 피상속인의 일생에 걸친 경제활동이 종결하는 때에 그에 대한 과세를 정산한다는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25) 취득과세형 상속세는 수증자(Donee)·수유자(Devisee)·상속인(Heir), 즉 재산의 무상취득자(Transferee)의 취득재산가액을 세원(稅源)으로 하여 과세하는 제도이다. 즉 무상취득자 기준으로 그 승계취득재산에 대해 과세한다. 특히 상속인·수유자 등이 여러 사람인 경우 유산을 먼저 각자의 상속분·유증분 등에 따라 분할·계산하고 이와 같이 분할·계산된 각자의 몫(지분)에다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유산과세형이 유산을 각 상속인 등의 상속분으로 분할하지 않고 무상이전자인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의 유산총액에다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과 이 점에서 구별된다. 취득과세형에서는 사망한 자의 유산액의 크기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상속인 등 각자가 무상취득한 재산가액의 크기에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유산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서 분산이전하면 할수록 상속세 부담의 총액은 유산과세형의 경우보다 적어진다. 이 점에 있어서 부의 분산을 유도하는 기능이 유산과세형보다 우수하다.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 상속세 부담이 무상취득자에게 귀착된다고 볼 때 무상취득자를 기준으로 그의 취득재산가액에 기초를 두어 누진과세하는 것은 능부담의 원칙에도 보다 적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드도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다음과 같은 유산과세형의 문제점으로 인해 조세논리(특히 응능 부담의 원칙에 맞아야 한다)에 충실한 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높다.

첫째, 유산과세형은 응능부담의 원리에 반한다. 그 이유는 유산의 분할 전 가액에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각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유산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여 각 상속인이 부담할 세액을 산정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유산을 많이 승계취득하는 상속인이나 유산을 적게 승계취득하는 상속인이나 초과누진의 한계세율(같은 높이의 명목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 조세부담능력의 관점에서 볼 때 초과누진구조의 세율하에서는 당연히 많은 유산을 상속받는 사람은 높은 한계세율을 적용받아야 하고 유산을 적게 상속받는 자는 낮은 한계세율을 적용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상속과세체계에서는 유산을 많이 상속받는 사람이나 적게 받는 사람이나 똑같은 한계세율을 적용받는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둘째, 유산과세형은 상속과세를 정당화하는 기본적 기능인 부의 분산을 유도하는 기능이 미흡하다. 상속과세를 지지하는 이론의 전제는 부의 고른 분산을 실현하여 부자의 자녀나 빈한한 자의 자녀나 인생의 출발점을 평등하게 하여 성공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속과세에 대해 갈채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전제가 사회정의라면 상속과세제도는 그러한 부의 분산 유도기능에 충실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그런데 부의 소유자가 부를 여러 사람에게 분산시키면 시킬수록 상속과세의 부담이 적어지는 취득과세형과는 달리 유산과세형은 부의 소유자가 부를 아무리 여러 사람에게 분산시켜도 상속과세의 부담은 적어지지

않는다. 즉 유산과세형에는 부의 소유자가 스스로 이를 많은 사람들에게 분산하도록 유도하는 기능이 전혀 없는 것이다.

셋째, 미성년자공제·장애자공제·배우자공제 등은 사회정책적 고려에 의해 특정한 상황에 처해 있는 상속인의 인적 사정을 과세에 반영하는 장치이다. 즉 특수한 사정에 처해 있는 상속인의 상속과세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그러한 상속인의 복지를 돕고자 하는 제도이다. 유산과세형에서는 그러한 공제효과가 그러한 공제사유가 없는 상속인들에게까지 그 부담경감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공제대상인 상속인에게는 그 혜택이 미미하게 돌아가는 모순이 있다.

## 2. 완전포괄주의의 문제점

세법상의 포괄주의란 열거주의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세법에 세금의 부과대상을 명백하게 미리 규정하지 아니하고, 그 종류·원천 여하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어떤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면 이에 대해 모두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세법의 입법방법을 말한다. 증여과세에 있어서의 포괄주의는 세법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이익을 무상이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으면 과세관서가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사회에 있어서 조세법상의 포괄주의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내재해 있다.

첫째, 조세법상의 포괄주의 입법은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 원칙인 조세법률주의와 충돌하게 된다. 증여과세에 포괄주의를 도입하는 경우 과세권자에 제한 없는 유추해석을 허용하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과세기관에 폭넓은 재량적 판단권을 부여하여 이를 남용하게 된다는 데 있다.

둘째, 경제활동상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한다. 민간부문의 경제주체들에게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면서, 경제활동을 통해 이룩한 재산의 소유권을 함께 보장하는 것은 시장경제주의의 기본바탕이다. 따라서 현대사회의 그 경제주체들은 자신의 노력에 의해 얻는 경제잉여에 대해 앞으로 부담하게 될 세금을 미리 예측하면서 투자 등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조세법이 모호하고 그 해석이 자의적이어서 이를 예측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경제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셋째, 과세권력의 남용을 자초하여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 증여과세에 포괄주의를 도입하면 행정부는 국회에서 제정하지 않은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의해 증여세 과세대상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신축시키는 것이 가능해져서 결과적으로는 포괄위임입법을 허용하게 되고, 나아가 과세권자에게는 폭넓은 자유재량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유추해석과 확장해석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고 있는 원칙, 즉 조세법률에 의해 재산권 보장에 대한 과세권력의 침해적 한계를 세법에 의해 확정(劃定)하려는 헌법의 원칙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세법상의 포괄주의는 위헌의 시비를 낳게 되는 것이다.

### 3. 현행제도상 비합리적 법조문

우리나라는 소득과세 중 특히 주식 등 유가증권에 대한 자본이득세의 정비는 뒤로 미룬 채, 김대중 전 대통령의 1999년 8.15 경

축사(상속과세의 강화)와 노무현 현 대통령의 2002년 대선공약(상속과세 완전포괄주의 도입)만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그동안 상속과세를 폐지 또는 완화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와는 달리 세수도 보잘 것이 없는 상속세와 증여세 강화에만 매달려 왔다. 그러한 연유로 다른 나라 같으면 자본이득세를 과세해야 할 세원에 대해 우리는 증여세를 과세하려는 무리한 논리 개발에 열중하게 된 것이다.

다음에서 예시하는 증여과세 등의 규정은 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 입법례에서도 채택하고 있지 아니한 제도들이다. 즉 포괄증여과세를 하고 있는 나라들도 채택하고 있지 아니한 무리한 과세방법인 것이다. 이는 자본이득세 과세방법을 강구하면서 증여과세 대상에서는 이를 제외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다.

### (1) 저가양수·고가양도 차익에 대한 증여과세

타인(특수관계의 존부를 따지지 아니한다)과의 거래에서 저가양수·고가양도를 증여로 취급하는 경우이다(상증법 35). 그 시가차액이 30% 이상에 해당하거나 또는 그 차액이 1억원인 경우에만 그 차액을 증여로 과세하므로 대부분의 경우 그 과세대상은 부동산이거나 주식 등 유가증권(전환사채·상장주식 등에 대한 일부거래는 제외하고 있다)일 것이다. 구법에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에 대해서만 이를 증여로 의제했었는데, 개정법에서는 특수관계자를 삭제함으로써 모든 사람간의 거래에 대해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에서 저가양수를 하거나 고가양도를 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대원칙인 계약자유의 원칙이 지배하는 영역이며,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이다. 이를 조세법이 관여하는 것

은 자유경제질서와 조화될 수 없다. 그리고 저가·고가를 판단하는 기준인 시가는 불확정개념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특히 부동산 같은 재산의 시가를 경제주체들이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sup>26)</sup> 이는 바로 납세자들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여 경제거래상의 의사결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 (2) 비상장주식 상장 시세차익에 대한 증여과세

비상장주식 상장 시의 시세차익을 증여로 취급하는 경우이다(상증법 41의3).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액면가액 1주당 5,000원(최대주주의 취득가액)인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사람이 그 주식을 법정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10,000원으로 평가하여 이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했는데 이 주식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안에 상장하게 되면서 1주당 시가 18,000원으로 상승한 경우 현행법에서는 당초의 증여행위와 주식상장행위까지를 연속된 증여행위로 보고, 주당 10,000원의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후, 다시 상장시세차익 8,000원(18,000원~10,000원)<sup>27)</sup>에 대해 증여세를 추가과세하기 위하여 당초 1주당 증여액 10,000원으로 과세한 증여세부과처분을 1주당 증여액 16,000원으로 경정처분하며, 그 차액 2,000원에 대하여는 그 주식을 매각할 때에 자본이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26) 현재 부동산 등의 시가평가는 공인감정사가 전문지식을 가지고 표준지의 공시시가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과세당국도 기준시가제도를 두어 스스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 평가의 객관성이 부족하여 과세업무에서 많은 마찰을 야기하고 있다. 이는 바로 시가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가를 말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실지거래금액을 시가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27) 1주당 추가 상승액 8,000원 중 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상승분이 2,000원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차감하여 1주당 상장시세차익은 6,000원으로 되며, 경정처분을 할 때 1주당 증여액도 16,000원으로 계산하게 된다.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직접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소급하여 3년 안에 최대주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10억원)으로 최대주주 외의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취득가액 총액 10억원)하고, 그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상장하면서 그 주식의 가액이 18억원(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주가 상승분은 없다고 가정한다)이 되었고, 상장 후 이들 주식을 20억원에 매각했다면 당초 증여액 10억원에 대해서는 1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상장으로 상승한 주식가액 8억원(상장차익)도 당초 증여의 연속으로 보아 증여액을 18억원으로 경정처분하여 증여세를 추가로 과세하며, 양도가액에서 증여세 과세가액을 차감한 2억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구조인 것이다.

비상장주식 상장 시세차익에 대한 증여과세 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현행제도는 국민의 조세부담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침해한다. 이는 바로 조세법률주의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면서 경제주체들이 자본시장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기 어렵게 한다.

둘째, 당초의 비상장주식의 직접 증여행위와 다른 행위주체의 의사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주식의 상장을 5년간 연속된 하나의 증여행위라고 보는 것, 그리고 소급하여 3년간에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행위, 그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 외의 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취득하는 행위 및 발행법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행위 등을 5년간 연속된 하나의 증여행위라고 보는 것은 전혀 법리에 맞지 아니하는 기상천외한 논리이다.

셋째, 이러한 증여개념을 조세법에서 규정한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 다른 나라들은 다음과 같이 이에 대해 자본이득세를 과세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비상장주식의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규정은 최대

주주 등과 수증자간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과잉금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3) 증세 과세 후 개발이익 등에 대한 증여과세

미성년자,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등이 재산을 증여받거나 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유상취득하고 그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등 사유로 인해 증가된 재산가치를 증여로 취급하고 있다(상증법 42④).

간단한 예로서 무자력자가 과세평가액 10억원인 토지(임야)를 증여받고, 그 후 4년이 되는 해에 그 증여받은 토지를 담보로 하여 은행으로부터 4억원을 대출받아 이 돈으로 형질변경(대지)을 완료한바, 그 대지를 즉시 20억원을 받고 양도하였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증여받은 후 형질변경까지의 4년간 정상적인 지가상승액은 1억원이라고 가정한다.

현행법에 의하면 당초의 증여 10억원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처분하고, 다음 대지로의 형질변경에 의한 가치상승분(10억원)도 당초의 증여행위가 연속된 결과라고 보며, 그 가치상승분을 위해 지출한 4억원과 정상적인 지가상승액 1억원을 차감한 5억원(20억원 - 10억원 - 4억원 - 1억원)에 대해 당초의 증여세 과세를 경정처분하는 형식으로 증여세를 다시 부과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리고 대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정상지가상승액도 자본이득이 되기 때문에, 양도가액 20억원에서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10억원, 자본

적 지출액 4억원과 증여세 경정처분에 의해 추가로 과세된 증여가액 5억원을 차감한 1억원(20억원 - 10억원 - 4억원 - 5억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될 것이다.

증세 과세 후 개발이익 등에 대한 증여과세 제도에 대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산을 수증한 후 5년이라는 기간 내에 당해 토지를 담보로 하여 대출받는 행위 및 이를 재원으로 한 개발행위 또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유상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행한 개발행위를 증여행위의 연속으로 보는 것 자체가 법리에 맞지 아니한다.

둘째, 위의 사례에 있어서 수증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이 20억원, 증여세 과세가액이 20억원이라면 자본이득은 0원이 된다. 따라서 정상지가상승액 1억원에 대하여는 자본이득과세가 누락될 것이다. 반면 수증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당초 과세처분한 증여가액 10억원과 자본적 지출액 4억원만을 차감하게 되면 형질변경으로 증가한 경제가치 5억원에 대하여는 증여세와 자본이득세가 중복적으로 과세되는 모순이 발생할 것이다.

#### (4) 부동산 무상사용수익에 대한 증여과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받는 무상사용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상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상증법 37). 이 규정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 또는 건물만을 무상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고, 수인(數人)이 당해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당해 부동산의 무상사용자로 한다(상증령 27①).

증여 시기는 사실상 당해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로 하고, 당해 부동산에 대한 무상사용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이 당해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상증령 27②). 그런데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 무상사용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종전 구법에는 “사업자인 토지소유자에게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데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구 상증법 37②)”는 규정이 있었다. 이를 2002년 12월 18일 개정법에서 삭제하였다. 그렇다면 소득세법상의 부동산의 무상사용 이익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해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한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무상사용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인지가 문제이다. 형식논리로는 두 가지 세목의 근거법과 과세요건이 다르고, 부동산 소유자의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이에는 소득세 과세)을 무상사용자에게 증여(이에는 증여세 과세)했다고 인정하여 그렇게 과세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세법의 대원칙인 실질논리에서 보면 부동산의 무상사용이익이라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비록 납세의무자는 다르지만, 소득세와 증여세를 모두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세목이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판례(파기환송: 대판, 2003. 5. 13, 2002두12458)는 반대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각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위 규정들의 요건에 모두 해당

할 경우 양자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의 과세만 가능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8두11830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동시에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고 하여 이를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공평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 판결은 지나치게 형식논리에 치우쳐 있지만 그러나 과세관서는 부동산 소유자의 얻을 수 있었던 소득에는 소득세법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고, 무상사용자에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과세관서가 이와 같이 조세법을 운용하는 경우 특수관계자에게 유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보다 증여세 부담을 더 지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여 과잉과세에 의해 국가가 부당이득을 취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 (5)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제45조의2에서 주식 등의 명의신탁 재산을 증여세 과세재산으로 의제하고 있다. 즉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은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의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질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이 규정은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현저하게 제한하는 의제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 법규에 의해 의제된 증여에 대하여는 법관의 재판을 받는 소송에서마저 납세자가 의제사실의 내용과 상반되는 객관적 증거를 가지고도 이를 다투어 번복시키지 못한다. 그리하여 헌법재판소도 이 의제는 추정규정으로 해석해야 합헌이라고 했다가 다시 의제는 그대로 합헌이라는 결정을 하는 등 해석을 놓고 논란이 되어 왔다.

둘째, 이러한 의제는 실질적으로 담세력이 없는 명의수탁자에게 가공적인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담을 지우는 제도로서 “담세력 있는 곳에 조세부담 있다”는 조세의 기본원리에 위배되고, 또한 그러한 의제규정에 의해 과세되는 경우에는 재판과정에서 객관적 증거에 의해 그 의제를 번복(명의수탁자가 담세력의 기반이 되는 재산을 지배·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의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셋째, 상속세와 증여세를 폐지하는 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영국 같은 나라는 오히려 증여세 과세대상을 감축시키면서 그 세율은 상속세의 2분의 1로 낮추고 있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 보면 증여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공적 담세력을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은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는 과세제도라고 할 수도 있다.

넷째, 주식 등이 명의신탁의 증여의제에 의해 명의수탁자가 증여세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 당해 명의신탁재산의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가? 즉 명의신탁의 의제로 증여세를 과세 받은 후 당해 신탁재산이 양도되거나 상속되는 경우 누가 그 소득 또는 상속재

산에 대해 납세의무자가 되는가 하는 문제와 연관된다. 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판례가 있다(대판, 2004. 9. 24. 2002두12137).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명의신탁 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고, 이는 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을 뿐이며, 설사 위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거래의 실질적인 증여인 것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명의신탁을 하여 둔 재산에 대하여 그 수탁자에게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이 신탁자인 피상속인의 소유에 속한 것이라는 실질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그 재산은 피상속인의 사망 시 당연히 상속재산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11. 28. 선고 98두17937 판결 참조).

문제는 주식 등이 명의신탁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은 여전히 명의신탁자의 것으로 남아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당해주식 등은 명의신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 재산이 되어 다시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고, 당해 주식 등을 명의신탁자가 재차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또 다시 증여세가 과세되며, 당해 주식 등을 명의신탁자가 양도한 경우에는 다시 주식 등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의미이다. 이야말로 기상천외한 논리구성인 것이다.

## 제4장

# 상속세의 경제적 파급효과



## I. 문헌조사

Modigliani and Brumberg(1954)와 Ando and Modigliani(1963)에 의해 생애소득가설(Life-Cycle Hypothesis)이 제기된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자본축적은 사람들이 노후를 대비하여 현재의 소득을 저축하기 때문에 이루어진다고 믿어 왔다. 그러나 Kotlikoff and Summers(1981)가 미국의 자본축적의 70%가 다음 세대로 부를 이전하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증명한 이후 상속과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다양한 방향에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상속과세에 대한 연구는 크게 상속동기, 적정 상속세율, 상속세의 행정 및 순응비용, 상속세가 노동 및 저축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분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1. 적정 상속세에 관한 연구

Slemrod and Yitzhaki(2001), Kaplow(2001) 등 적정 상속세에 관한 연구들은 형평과 효율간의 균형관계를 모색하는 기존의 적정조세이론 틀 내에서 접근하고 있다.<sup>28)</sup> Kaplow(2001)는 근로소득세 또는 소비세와 마찬가지로 상속세도 생애소비, 여가, 상속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소비세나 근로소득세와 상속세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Kaplow(2001)는 단지 여가와와의 보완성의 정도에 따라 적정 상속세를 결정하고 있다. 즉 여가에 대해 보완적인 성격이 소비보다 상속이 더 강

---

28) 이는 기존의 적정조세이론과 일치한다. 적정조세이론에서는 여가와 보완성이 높은 재화에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 효율성의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약)하다면, 상속에 대한 세율을 소비보다 높(낮)게 부과해야 한다.

Slemrod and Yitzhaki(2001)에서는 Kaplow(2001) 연구가 엄밀한 의미에서 효율성 관점에서만 접근한 이론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적정 상속세는 상속세로 인한 효율성의 한계비용과 형평성의 한계편익이 일치하는 점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속세는 누진적 구조가 강하기 때문에 형평성의 한계편익이 다른 세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효율성의 한계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상속세 부과에 당위성이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ernheim(1987)에서 추정된 바와 같이 행정 및 납세 순응비용을 포함한 상속세의 한계비용은 무한정(Infinite)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적정 상속세율은 0에 가깝다는 것이다.

## 2. 상속동기에 관한 연구

상속세는 유산상속의 동기를 어떻게 가정하느냐에 따라 매우 다른 연구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유산상속의 동기를 크게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첫 번째는 Davies(1981), Abel(1985), Hurd(1987)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서, 갑작스런 죽음으로 인해 뜻하지 않게 자손에게 유산이 상속된다는 이론(Accidental Bequest Model)이다. 사람의 삶은 매우 불확실하기 때문에 누구나 미래의 건강, 은퇴 이후의 소비를 대비하여 저축을 하고 재산을 축적하게 된다. 그러나 자기의 죽음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죽기 전까지 모든 재산을 소비하지 못하고, 남은 재산이 자녀에게 상속된다. Abel(1985)은 국가 전체의 자본 가운데 많은 부분이 이와 같이 뜻하지 않은 유산상

속으로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Davies(1981)와 Hurd(1987)는 재산 자체가 효용을 가져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죽기 전에 노인들이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증거로 이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Bernheim(1991), Gale and Scholz(1994), Kotlikoff(1989) 등은 세대간 증여, 생명보험, 연금 등 의도적으로 노후를 대비하거나 세대간 부를 이전하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갑작스런 죽음만으로 노인들의 재산보유 행태를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갑작스런 죽음으로 인해 남은 재산에 부과되는 상속세는 적어도 피상속인의 경제적 행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이때 부과되는 상속세는 일괄세(Lump-Sum Tax)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은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효용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정부의 세수입만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상속인의 상속재산은 상속세로 인해 감소하기 때문에 피상속인과 달리 상속인은 상속세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상속세의 당위성은 상속세로 인해 감소한 상속인의 효용과 증가한 정부 세수입과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된다.

두 번째는 Barro(1974)와 Becker(1974)에 의해 제기된 순수 이타적 상속이론(Pure Altruism Model)을 들 수 있다. 이들 이론에서 부모의 효용함수는 자신의 소비와 자녀의 효용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부모는 자신의 소비를 한 단위 포기함으로써 발생하는 한계비용과 상속으로 인해 증가하는 자녀의 소비에 대한 한계편익이 같은 점에서 상속을 결정하게 된다. 순수 이타적 상속이론은 만약 자녀들이 보유한 기본재산(Endowment)이 각각 다르다면 부모의 상속도 차별화되어 자녀에게 지급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부모는 자녀의 기본재산에 따라 상속을 차별화함으

로써 모든 자녀의 한계효용이 같아지도록 만드는 것이 곧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된다. 그러나 Tomes(1988), Becker and Tomes(1986), Perozek(1996)을 제외한 대부분의 실증분석은 이타적 상속이론과 다른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Cox(1987), McGarry and Schoeni(1995), Altonji et al.(1997)은 부모의 부가 1달러 증가하고 자녀의 부가 1달러 감소한다면, 이타적 상속동기 이론에 의하면 상속이 1달러 증가해야 하지만 실증분석 결과는 1달러보다 적게 상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Menchik(1980, 1988), Wilhelm(1996)은 실증분석 결과 이타적 상속이론과 달리 소득이 적은 형제가 소득이 많은 형제보다 적은 상속을 받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순수 이타적 상속이론에서 상속은 외부효과(Externality)를 창출한다. 만약 부모가 자신의 효용과 자녀의 효용을 극대화하고 자녀가 자신의 효용만을 극대화한다고 가정한다면, 부모의 선택은 자신의 소비를 얼마만큼 줄이고 상속을 통해 자녀의 소비를 얼마만큼 증가시킬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면 된다. 그러나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사회계획자(Social Planner) 입장에서는 두 가지 상쇄효과에 의해 결정되는 부모의 효용뿐만 아니라 자녀의 효용도 함께 고려하게 된다. 상속으로 인해 자녀의 한계효용이 조금이라도 증가하게 된다면, 상속은 사회적 적정수준보다 낮은 수준에서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순수 이타적 상속이론에 의하면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하는 대신 보조금을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상속이 노동공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만약 상속이 노동공급을 감소시킨다면, 상속에 대한 보조금 지급의 타당성은 약화된다. 또한 자녀가 부모의 이타적 상속동기를 안다면 자녀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는 필요 이상으로 소비를 함으로써 부모로부터 더 많은 상속을 받으려는 동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Gale and Perozek(2001)은 상속세가 이러한 과소비를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 번째는 순수교환(Pure Exchange) 이론으로서 부모는 자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대가로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준다는 이론이다. Bernheim et al.(1985)과 Cox(1987)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는 상속 또는 증여를 통해 자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매하고, 이러한 거래는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행위라는 것이다. Bernheim et al.(1985)에 의하면 부모는 부의 이전을 연기함으로써 보다 오랜 기간 동안 자녀를 컨트롤하고 교환으로부터 이익을 더 많이 가져가고자 하기 때문에 부모는 증여보다는 상속을 선호하게 된다.

순수교환 이론에 따르면 상속세는 소비세와 동일한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상속세의 크기는 자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부모의 수요탄력성에 달려 있다. 다시 말해서 자녀의 사랑과 관심에 대한 수요 탄력성이 매우 낮(높)다면 적정 상속세율은 상대적으로 높(낮)게 부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Yarri(1965), Fusher(1973), Blinder(1976), Andreoni(1989), 문형표(1990), Carroll(2000) 등이 제기한 부모는 상속하는 것 자체가 즐겁기 때문에 자녀에게 상속한다는 “Joy-of-Giving” 이론을 들 수 있다. 상속동기가 다르지만 순수이타적 상속동기와 같이 상속은 경제적 외부효과를 창출하게 된다. 따라서 상속에 대해 보조금을 지불하는 것이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된다. 그러나 “Joy-of-Giving” 이론에서 문제는 부모와 자녀 세대 모두 소비를 줄이도록 하는 정책이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하는 정책이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부

모가 상속으로부터 얻는 효용이 매우 큰 경우 두 세대의 소비를 줄이고 상속을 키우는 경우 사회적 후생이 극대화될 가능성이 높다.

상속동기를 검증한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는 개인마다 다른 동기를 가지고 자녀에게 상속하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이론으로 현실에서 발생하는 상속동기를 모두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 3. 일반균형하의 상속세의 파급경로

상속세는 다양한 경로를 거쳐 상속계층뿐만 아니라 무상상속계층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더욱이 상속세는 상속세가 부과되는 시점뿐만 아니라 생애 전체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역동적이 파급효과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상속세의 파급효과는 세대중복형모형과 같이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공존하는 일반균형모형틀 내에서 분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 된다.<sup>29)</sup> 세대중복형 일반균형모형을 구축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상속동기를 어떻게 가정하는가와 상속과 소비와 대체성, 그리고 시점간 대체성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이다. 시점간 대체탄력성은 역동적인 파급효과와 깊은 관련이 있으며, 소비와 상속의 대체탄력성은 정태적인 파급효과와 깊은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시점간 대체탄력성이 크고, 피상속인의 사망 시 높은 상속세가 부과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 피상속인

---

29)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세제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재벌의 경영권 승계이다. 상속세가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자본의 해외 유출 등은 산업조직론에 입각한 계량분석 방법도 가능할 것이다.

의 사망 시 소비지출을 생존 시 소비지출로 대체하게 된다.<sup>30)</sup> 이러한 경우 상속세를 낮춤으로써 소비증가에 따른 저축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상속과 소비의 대체탄력성이 높은 경우, 상속세는 상속에서 소비로 대체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상속과 소비의 탄력성이 매우 낮(높)다면 상속세율을 상대적으로 높(낮)게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속세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정 요소에 국한하여 이를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 2>와 같이 이를 도식화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현실경제를 살펴보면 가계는 상속계층과 무상속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속세는 피상속인, 상속인, 그리고 무상속계층의 의사결정에 상이한 영향을 미친다. 상속세가 인하되면 상속의 가격이 소비&여가 복합재화의 가격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해지기 때문에 피상속인은 소비-여가를 줄이고 상속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대체효과가 발생한다. 피상속인의 후생함수가 소비-여가-상속의 복합재화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상속세 변화에 따른 새로운 균형은 소비-여가 복합재화의 감소에 따른 한계비용과 상속증가에 따른 한계편익이 일치하는 점에서 이루어진다. 상속세는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기 때문에 상속세 인하는 기존의 조세왜곡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sup>31)</sup> 다시 말해서 낮은 상속세하에서의 자원배분이 높은 상속세하에서의 자원배분보다 효율

30) 유산의 무상이전지출을 피상속인의 소비지출과 같다고 전제할 경우, 사망 시의 소비지출에 대하여는 무겁게 과세하고 생존시의 통상적 소비지출에는 가볍게 과세한다고 할 때 사망 시의 피상속인의 소비지출을 생존시의 소비지출로 대체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31) 모든 조세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한다. 본 연구에서는 단지 상속세를 인하고 정부지출을 줄일 때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상속세 인하로 인해 줄어드는 정부수입을 다른 세원을 통해 충당하는 경우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적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상속세 인하는 소비-여가 복합재화와 상속간의 자원배분 왜곡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상속세 인하는 피상속인의 후생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상속하는 시점이 은퇴 이후로 피상속인의 피상속시기의 노동공급은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노동-여가의 선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상속인의 입장에서 상속세 인하는 실질 소득증가를 의미한다.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증가하고 저축이 증가하게 된다. 소득증가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는 두 가지 상쇄효과에 의해 결정된다. 여가가 정상재라면 소득증가는 노동보다 여가를 선호하게 되어 노동공급이 감소하는 소득효과가 발생한다. 반대로 상속으로 인해 소비가 증가하면 여가가 감소하고 노동이 증가하는 대체효과가 발생한다.<sup>32)</sup> 노동공급은 이상의 두 가지 효과가 서로 상쇄되어 결정되는데, 이는 소비와 여가의 대체탄력성에 영향을 받게 된다. 상속세 변화에 대한 노동공급의 변화는 실증분석의 몫으로 남는다. 상쇄효과에 의해 노동공급이 증가하고 여가가 감소하더라도 소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상속인의 후생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속인도 사망 시 피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앞서 설명한 피상속인과 같은 경제행위를 보이게 된다. 따라서 상속계층 전체의 의사결정은 상속인으로서의 의사결정과 피상속인으로서의 의사결정이 복합되어 나타나게 된다. 상속세 인하에 대한 상속계층의 경제행위는 소비증가, 저축증가, 그리고 후생증가로 특징지어진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실증분석 결과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이와 같은 상속인의 경제행태 변화는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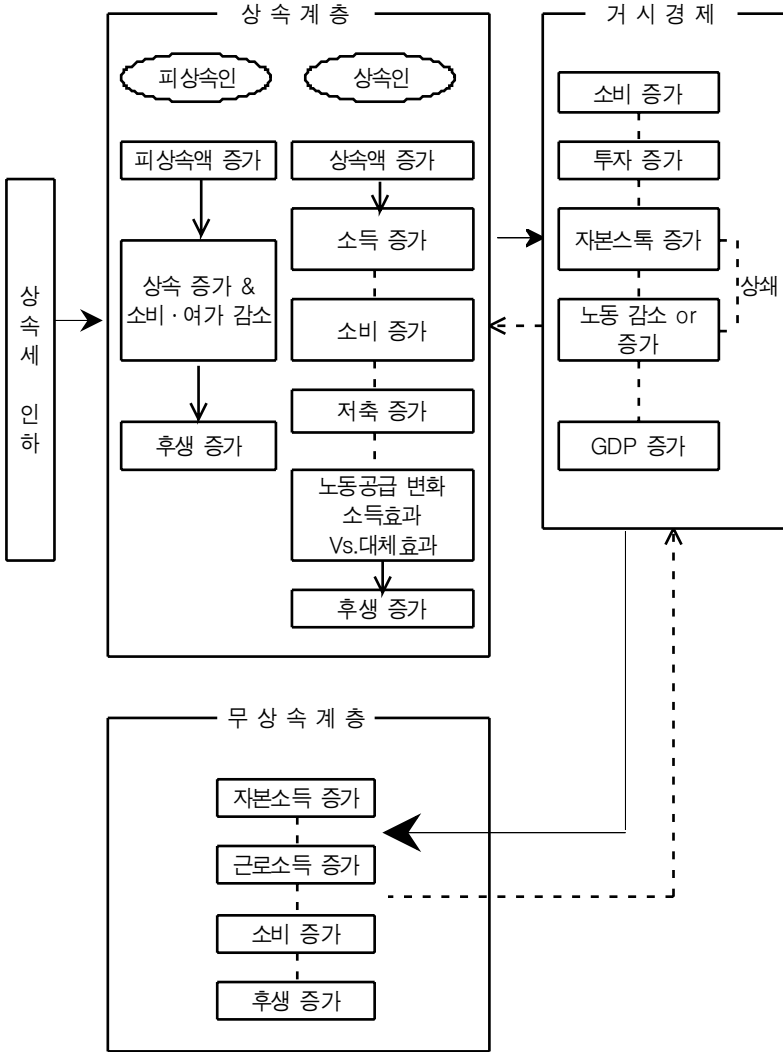
---

32) 소득효과에 의해 여가가 증가하면 여가의 상대가격이 증가하여 여가 대신 노동으로 전환하는 대체효과도 함께 발생한다.

게 되고 이는 무상속계층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경로를 거치게 된다. 일반적으로 상속인의 저축증가는 투자와 자본소득을 증가시켜 경제가 성장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는 노동공급 감소에 의해 어느 정도 상쇄되지만 상속세 인하는 GDP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GDP가 증가하면 자본과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무상속계층의 자본소득과 근로소득이 증가한다. 소득증가는 소비를 증가시키고 결국 무상속계층의 후생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상속세 인하는 계층별 경제행위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다시 환류효과에 의해 조정을 받으면서 새로운 균형에 도달하게 된다. 이와 같이 복잡한 파급효과를 고려한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 절에서 보다 자세히 논의하기로 한다.

<그림 2> 상속세의 경제적 파급경로



## II. 입력 데이터

현행 과세체계상 공제를 고려할 때 상속재산 가액이 5억원이 넘어야 과세대상이 된다.<sup>33)</sup> 앞서 살펴보았듯이 기초공제 & 인적공제와 일괄공제 5억원 중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이면 상속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국세통계연보』에 5억원 이하의 재산가액을 가진 피상속인도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5억원 이상의 재산가액을 가진 피상속인만 과세대상자로 가정한다. 또한 분석의 편의와 상속세의 파급효과를 보다 명확히 살펴보기 위해서 5억원 이하의 재산가액을 가진 계층은 상속을 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5억원 이상의 상속재산가액을 가진 계층을 “상속계층”으로 분류하고 5억원 이하의 상속재산가액을 가진 계층은 “무상속계층”으로 분류하기로 한다.

2004년도 총사망자 약 258,021명 중 상속재산이 5억원 이상인 인원은 4,404명으로 약 1.6%에 달한다.<sup>34)</sup>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순자산보유 순으로 1.6%에 해당하는 인원을 상속계층으로 분류하였다.<sup>35)</sup> 그리고 계층별 학력, 근로소득, 자본소득, 자

---

33) 『국세통계연보』에는 상속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도 납세 실적이 잡히고 있다. 국세청 담당자는 이는 국외거주자 또는 5~10년 이내의 증여한 재산과 관련된 행정상의 편의 때문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34) 『국세통계연보』(2004), “2-2-13 상속재산가액의 계급별 피상속인수, 재산가액 및 상속세 결정현황” 참조.

35) 한국노동패널조사가 전수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패널조사에 기초한 상위 16%가 국세통계연보위 상속 납세자의 분포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전수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Fullerton and Rogers(1993)의 경우에서 보듯이 PSID와 같이 패널조사 데이터에 기초하여 납세자의 분포를 추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방법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개별납세자료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노동패널조사의 분포와 개별납세자의 분포가 일치한다고 가정할 필요가 높다.

산비중을 『한국통계연감』에 나타난 거시데이터에 적용하여 계층별 관련 데이터를 도출하였다.

<표 11> 계층별 소득, 소비, 자산 비중

(단위: %)

	무상속계층	상속계층
인원	98.4	1.6
평균학력(학력지수*)	4.8	5.8
근로소득	96.3	3.7
자본소득	77.6	24.8
정부이전	98.0	2.0
소비	96.8	3.2
저축	93.6	6.4
부동산(전세자금 포함)	65.3	34.7
부동산(전세자금 미포함)	59.0	41.0
금융자산	84.5	15.5
부채	92.3	7.7
순자산	52.5	47.5

주: \* 학력지수: 1=미취학, 2=무학, 3=초등학교, 4=중학교, 5=고등학교,  
6=2년제 대학, 7=4년제 대학, 8=대학원 석사, 9=대학원 박사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이용하여 도출한 계층별 학력, 근로소득, 자본소득, 자산비중 등은 <표 11>에서 찾을 수 있다. 평균학력은 무상속계층의 경우 4.8로서 대략적으로 고등학교 졸업 수준이며, 상속계층은 5.8로서 2년제 대학졸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총근로소득의 96.3%는 무상속계층이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3.7%는 상속계층이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비중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상속계층의 인원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자본소득의 경우 무상속계층이 77.6%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속계



층은 24.8%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무상속계층의 주 소득원은 노동인 반면 상속계층의 주 소득원은 자본임을 알 수 있다. 정부는 98% 이상을 무상속계층에 이전하고 있으며, 나머지 2%만을 상속계층에 이전한다. 자산의 47.5%는 상속계층이 보유하고 있으며 52.5%는 무상속계층이 보유하고 있다.

<표 12> 한국의 사회회계행렬(SAM)

(단위: 2004년, 십억원)

	생산	자본	노동	세금	상속	소비	투자	정부	대외 거래	합계
생산						401,469	230,217	105,517	351,037	1,088,239
자본	342,388									342,388
노동	344,641									344,641
세금	91,564	24,678	8,913		953					126,108
상속						4,731				4,731
소비		317,709	335,728		3,778			21,979		679,195
투자						272,995		-1,389	-41,390	230,217
정부				126,108						126,108
대외거래	309,647									309,647
합계	1,088,239	342,388	344,641	126,108	4,731	679,195	230,217	126,108	309,647	

자료: 『한국통계연감』(2005), 『국세통계연보』(2004)

<표 11>에 나타난 계층별 비중을 <표 12>의 SAM(Social Account Matrix)에 적용하면 <표 13>과 <표 14>와 같은 계층별 SAM 테이블을 도출할 수 있다. SAM은 일정기간 동안의 모든 경제적 거래를 요약하여 보여 주는 테이블이다. 세로는 지출을 가르는 수입을 의미하며 수입과 지출은 항상 일치한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5억원 이상의 재산가액을 가진 과세인원의 총재산가액은 4조 7,310억원에 달하며 이에 상응하는 총결정세액은 9,530억원이다. 따라서 세후 순상속가액은 3조 7,780억으로 평균세율은 25.2%이

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5억원 이하의 상속재산가액을 가진 피상속인은 상속을 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기 때문에 <표 13>에서 보듯이 무상속계층의 상속과 상속세는 모두 0으로 처리하였다.

<표 13> 상속세 비과세대상 계층의 SAM

(단위: 2004년, 십억원)

	생산	자본	노동	세금	상속	소비	투자	정부	대외거래	합계
생산						388,821	178,655	89,178	289,909	946,563
자본	265,703									265,703
노동	331,882									331,882
세금	79,643	19,151	8,583		0					107,377
상속						0				0
소비		246,552	323,299		0			19,566		589,416
투자						200,595		-1,366	-20,574	178,655
정부				107,377						107,377
대외거래	269,335									269,335
합계	946,563	265,703	331,882	107,377	0	589,416	178,655	107,377	269,335	

자료: 『한국통계연감』(2005), 『국세 통계연보』(2004)

<표 14> 상속세 과세대상 계층의 SAM

(단위: 2004년, 십억원)

	생산	자본	노동	세금	상속	소비	투자	정부	대외거래	합계
생산						12,647	51,562	16,339	61,129	141,677
자본	76,685									76,685
노동	12,759									12,759
세금	11,921	5,527	330		953					18,731
상속						4,731				4,731
소비		71,158	12,429		3,778			2,414		89,778
투자						72,400		-22	-20,816	51,562
정부				18,731						18,731
대외거래	40,313									40,313
합계	141,677	76,685	12,759	18,731	4,731	89,778	51,562	18,731	40,313	

자료: 『한국통계연감』(2005), 『국세 통계연보』(2004)

90 상속세, 경제적 기회균등 보장하는가?

### III. 분석모형

본 연구는 앞서 언급한 상속동기 중 순수교환 이론에 기초하고 있다. 상속동기와 관련된 이론 중 특정 하나의 이론만을 가지고 현실세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속동기를 설명하기는 힘든 상태이다. 따라서 현실세계를 보다 잘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론들을 혼합하여 모형을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러한 혼합된 이론을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입력데이터의 가용성이 높고 계량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순수 교환이론에 기초하여 분석하기로 한다.<sup>36)</sup>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는 자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대가로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준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Bernheim et al. (1985)과 Cox(1987)가 제기한 바와 같이 보다 오랜 기간 동안 자녀를 컨트롤하고 교환으로부터 잉여를 최대한 얻기 위해 부모는 마지막 기에 재산을 자녀에게 상속한다고 가정한다. 상속인이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는 시기는 Rasmussen and Rutherford(2004)가 제시한 확률을 가지고 31세에서 45세 사이에 받는다고 가정하였다.

순수 교환이론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 구축한 모형은 5세 간격의 연령집단(Cohort)으로 구성된  $i$  세대가 공존하는 세대중복형 일반균형모형(Overlapping Generation Equilibrium Model)으로 분류된다. 본 연구에서 경제주체는 미래의 가격변화에 대해 완전한 예측

---

36) 일반균형모형에서 균형값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시장청산, 영의 이윤조건, 소득균형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따라서 순수 이타적 이론과 Joy-of-Giving 이론과 같이 외부성을 가지는 모형은 실증적 균형을 도출하는 것을 어렵게 된다. 더욱이 자녀의 효용이 부모의 효용에 미치는 정도 등을 계량화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이다. 그러나 "Accidental Bequest" 동기는 경제주체의 사망위험을 상정한다면 어렵지 않게 분석이 가능하다. 이는 향후 과제로 남겨 두기로 한다.

능력(Perfect Foresight)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미래의 가격변화를 완전하게 예측하고 소비자는 생애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현재의 소비 및 저축 그리고 노동공급을 결정하며, 생산자는 이윤극대화를 위해 투자와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를 결정하게 된다.

## 1. 가계부문

본 연구에서 소득계층  $h = \{1, 2\}$ 는 무상속계층과 상속계층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i$  세대는 21세부터 80세까지 5년 단위로  $j$  기간 동안 생존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분석기간은 5년을 주기로 2004년부터 2154년까지로 한정하였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j$ 는 나이를 나타내는 색인으로  $j = \{0, 5, \dots, 55\}$ 로 표기되며, 시간을 나타내는  $t$ 는  $t = \{0, 5, 10, \dots, 80\}$ 으로 표기된다. 초기 연도인 2004년에 태어난 세대  $i$ 를 0이라고 가정하면 2004년에는  $\{0, -5, -10, \dots, -50, -55\}$ 의 세대가 공존한다.

소득계층  $h$ 의 대표소비자는 21세부터 80세까지 생존하는 동일한 생애주기를 가진  $i$  세대로 세분된다.  $t = i$ 기에 태어나  $j$ 기간 생존하는  $i$  세대의 생애효용 극대화문제를 수식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만약  $t=0$ 이라면 초기연도에 태어난  $i=0$ 세대의  $j$ 기간 동안의 생애효용함수를 의미한다.

$$\max U = \sum_{t=i}^{t=T+i} \left(\frac{1}{1+\rho}\right)^{t-i} \frac{V_{h,i,t}^{1-\theta}}{1-\theta} \quad (1)$$

$$s.t. \quad V_{h,i,t} = \{\alpha_1 Z_{h,i,t}^\sigma + (1-\alpha_1)b_{h,i,t}^\sigma\}^{\frac{1}{\sigma}} \quad \forall h = 2, i = 55 \quad (2)$$

$$s.t. \quad Z_{h,i,t} = \{\alpha_2 c_{h,i,t}^\rho + (1 - \alpha_2) l_{h,i,t}^\rho\}^{\frac{1}{\rho}} \quad (3)$$

$$s.t. \quad \sum P_{c,t} c_{h,i,t} + \sum P_{b,t} (1 + \tau_{b,t}) b_{h,i,t} \\ = \sum [P_{l,t} \pi_{h,i,t} (w_{h,i,t} - l_{h,i,t}) + P_{f,t} \xi_{h,i,t}] + \sum P_{b,t-i}^r b_{r,t-i} \quad (4)$$

$$\omega_{i,t} \geq l_{i,t} \quad (5)$$

식 (1)에서  $1/\theta$ 은 시점간 대체탄력성(Intertemporal Elasticity of Substitution)을 의미하며,  $\rho$ 는 시간할인을,  $V_{h,i,t}$ 는  $h$ 소득계층이  $i$ 연령 때 소비하는 소비-여가-상속 복합재화로서 소비-여가의 복합재화  $Z_{h,i,t}$ 와 상속( $b_{h,i,t}$ )의 CES 함수로 구성된다.  $1/(1 - \sigma)$ 은  $Z_{h,i,t}$ 와  $b_{h,i,t}$ 와의 대체탄력성을 나타낸다.  $Z_{h,i,t}$ 는 소비재화( $c_{h,i,t}$ )와 여가( $l_{h,i,t}$ )로 구성된 소비복합재화이며,  $1/(1 - \rho)$ 은 소비와 여가의 대체탄력성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상속은  $h = 2$ 계층, 즉 상속계층에만 해당이 되고 또한 상속은 말기  $i = 55$ 에 이루어진다고 가정하였기 때문에 식(2)는 단지  $h = 2$ 와  $i = 55$ 일 때만 적용된다.

식 (4)는  $i$ 세대의 생애 예산제약식을 보여 주고 있다.  $\pi_{h,i,t}$ 는 연령에 따라 변하는  $h$ 계층의 노동생산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소비자의 임금은 노동생산성에 대응하여 변화는 유효노동임금으로 정의될 수 있다.  $\omega_{i,t}$ 는  $i$ 세대에게 할당된 시간으로서  $\omega_{i,t} = \omega(1 + g)^i$  비율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여기서  $g$ 는 경제성장률을 의미한다.  $P_{c,t}$ 는 세후 소비재 가격,  $P_{b,t}$ 는 상속에 대한 세전가격을 의미하며,  $\tau_{b,t}$ 는 상속세율을 의미한다.  $P_{l,t}$ 는 생산성이 반영되지 않은 세후 시장임금을,  $P_{f,t}$ 는 정부의 가계이전소득의 가격을 나타낸다.  $\xi_{i,t}$ 는 정부가  $h$ 계층의  $i$ 세대에게 이전한 소득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b_{r,t-i}$ 와  $P_{r-i}^r$ 은  $i$ 기 전에 부모로부

터 상속받은 재산과 가격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상속은  $10 \leq i \leq 20$  기간에 받는다고 가정하였다. 다시 말해서 연령이 30에서 40세 사이에 부모가 사망하며 상속받을 확률은 Rasmussen and Rutherford(2004)에 따라  $prob_i = 0.14 + 0.038i - 0.002i^2$ 으로 가정하였다.

식 (4)에서 모든 가격은 현재가치로 환산된 가격을 의미한다. 따라서 모든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할인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 수록 하락하게 된다. 식 (4)는 암묵적으로 생애소득은 유산상속을 제외하고 생애기간 동안 모두 소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본 모형에서는 완전예측능력과 유동성제약이 없다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식 (4)는 현재의 소비를 위해서는 미래의 소득으로부터 차입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소비를 위해 저축도 자유롭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식 (5)에서 만약  $\omega_{h,i,t} = l_{h,i,t}$ 가 된다면 모든 할당 시간을 여가를 위해 사용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본 모형은 실업 또는 은퇴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i$ 세대의 효용 극대화조건과 모수값은 캘리브레이션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 2. 생산부문

분석의 단순화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내 생산은 자본과 노동을 투입하여 생산된다고 가정하였다. 모든 기업은 완전경쟁하에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며 재화의 판매 수익은 생산요소에 완전히 배분된다. 따라서 생산함수는 규모에 대한 수확불변(Constant Return to Scale)의 가정이 충족된다.

$$Y_t = [ \beta_y K_t^{\varepsilon_y} + (1 - \beta_y) L_{y,t}^{\varepsilon_y} ]^{\frac{1}{\varepsilon_y}} \quad (6)$$

$Y_t$ 는 총생산,  $K_t$ 는 자본,  $L_t$ 는 노동을 의미한다.  $\beta_y$ 는  $KL_t$  복합재화의 비중을 나타내는 모수이며,  $1/(1 - \varepsilon_y)$ 는  $KL_t$ 와  $A_t$ 의 대체탄력성을 의미한다.<sup>37)</sup>

식 (6)에 의해 생산된 최종재화  $Y_t$ 는 수출재화와 국내소비재화로 전환된다.  $Y_t$ 가 불변전환탄력성(Constant Elasticity of Transformation)에 의해 수출재화( $X_t$ )와 국내소비재화( $XD_t$ )로 전환된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 \beta_x X_t^{\varepsilon_x} + (1 - \beta_x) XD_t^{\varepsilon_x} ]^{\frac{1}{\varepsilon_x}} = Y_t \quad (7)$$

최종소비재로 사용되는 아밍톤 복합재화( $A_t$ )는 국내재화와 수입재화( $XM_t$ )간의 불완전대체관계로 구성된다. 아밍톤 복합재화는 가계소비수요( $C_t$ ), 정부수요( $G_t$ ) 및 투자수요( $I_t$ )로 다음 식과 같이 분배된다.

$$A_t = [ \beta_{a,j} XD_{j,t}^{\varepsilon_a} + (1 - \beta_{a,j}) XM_{j,t}^{\varepsilon_a} ]^{\frac{1}{\varepsilon_a}} \quad (8)$$

$$A_t = C_t + I_t + G_t \quad (9)$$

식 (10)에 나타난 자본스톡은 다음과 같은 법칙에 의해 형성된다. 다음 기의 자본스톡은 감가상각  $\delta$ 를 제외한 현재의 자본스톡량과 투자의 합으로 결정된다.

$$K_{t+1} = (1 - \delta) K_t + I_t \quad (10)$$

---

37) 설명의 편의를 위해 이하 대체탄력성과 비중모수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겠다.

### 3. 정부부문

정부수입은 자본소득세( $\tau_{r,t}$ ), 근로소득세( $\tau_{w,t}$ ), 소비세( $\tau_{c,t}$ )와 상속세  $\tau_{b,t}$ 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를 정부소비지출( $G_t$ )와 가계 이전( $Tr_t$ )으로 지출한다. 정부지출과 수입과의 차이는 재정적자( $D_t$ )로 정의된다.

$$\tau_{r,t}R_t + \tau_{w,t}W_t + \tau_{c,t}C_t + \tau_{b,t}B_t = G_t + Tr_t - D_t \quad (11)$$

여기서  $R_t$ 는 총자본소득,  $W_t$ 은 총임금 수준,  $B_t$ 는 총피상속액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예산불균형은 정부지출이 변하여 달성된다고 가정하였다. 다시 말해서 정부 정책변화로 세수입이 변하면 정부지출을 조정하여 총세수입( $\Phi_t$ )과 총지출( $\Gamma_t$ )이 일치된다. 결국 매기의 정부재정적자( $D_t$ )는 0이 된다.

$$\Phi_t = \Gamma_t \quad (12)$$

### 4. 항등식

수요측면에서 국민계정 균형은 자본소득( $R_t$ ), 임금( $W_t$ )과 정부이전소득( $Tr_t$ ) 그리고 상속( $B_t$ )의 합이 총소비( $C_t$ ), 총저축( $S_t$ )과 피상속액  $B_t$ 의 합과 일치할 때 달성된다.

$$R_t + W_t + Tr_t + B_t = C_t + S_t + B_t \quad (13)$$

총저축과 총투자의 균형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즉, 총저축에



서 재정적자( $D_t$ )를 제외하고 여기에 무역수지적자( $TB_t$ )의 합이 총투자( $I_t$ )와 일치한다.

$$S_t - D_t + B_t + AR_t = I_t \quad (14)$$

## 5. 캘리브레이션

본 연구의 캘리브레이션은 사회회계행렬에 정리된 변수 값과 앞서 설명한  $h$ 계층의  $i$ 세대의 생애효용 극대문제가 충족되는 모수값과 생애소비, 소득, 저축 경로를 도출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본 연구에서는 균형이자율은 5%로 가정하였으며, 인구성장률은 1%로 가정하였다. 그리고 감가상각률은 0.07로 가정하였다. 상속세의 파급효과는 시점간 대체탄력성, 소비&여가 복합재화와 상속과의 대체탄력성, 소비와 여가의 대체탄력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시점간 대체탄력성( $1/\theta$ )은 Kotlikoff and Auerbach(1987)와 같이 0.25로 설정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대적 위험회피를 나타내는  $\theta$ 는 1.5~4로 추정되고 있다. 구분열(1992)은  $\theta$ 를 1.74로 추정하였으며, 남주하(1998)는 2.5, 이민원(1992)은 1.44로 추정하였다. 외환위기 이후의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최진석(2006)에 따르면  $\theta$ 가 3.8~6의 범위를 갖는다.

소비와 여가의 대체탄력성은 Rasmussen and Rutherford(2004)에 따라 0.8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소비-여가의 복합재화와 상속간의 대체탄력성도 Rasmussen and Rutherford(2004)와 같이 0.8로 설정하였다. Kenc and Sayan(2001)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소

비-여가 복합재화와 상속간의 대체탄력성은 0.5~0.9의 범위를 갖는다. 본 연구는 결과의 신뢰성을 위해 시점간 대체탄력성, 여가-소비 복합재화와 상속간의 대체탄력성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시도하였다.

Rasmussen and Rutherford(2004)에 따라 상속인은 나이가 31에서 45세 사이에  $prob_i = 0.14 + 0.038i - 0.002i^2$ 의 확률을 가지고 상속을 받는다고 가정하였다. 즉 상속인의 나이가 31~35세 사이에 부모가 사망할 확률은 47.1%이며, 36~40세에 사망할 확률은 38.2%, 41~45세에 사망할 확률은 14.7%에 달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무상속계층의 평균학력은 고등학교졸업 수준이며 상속계층은 2년제 대학졸업 수준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영준(2003)의 추정치를 이용하여 계층별  $i$ 세대의 연령별 노동생산성을 도출하였다. 전영준(2003)은 “2001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를 이용하여 중졸 이하, 초대졸 이하, 대졸 이하의 노동생산성을 Welch(1979) 방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영준의 추정치 중졸 이하와 초대졸 이하의 평균을 무상속계층의 노동생산성이라고 가정하였으며, 초대졸 이하와 대졸 이하의 평균을 상속계층의 노동생산성으로 가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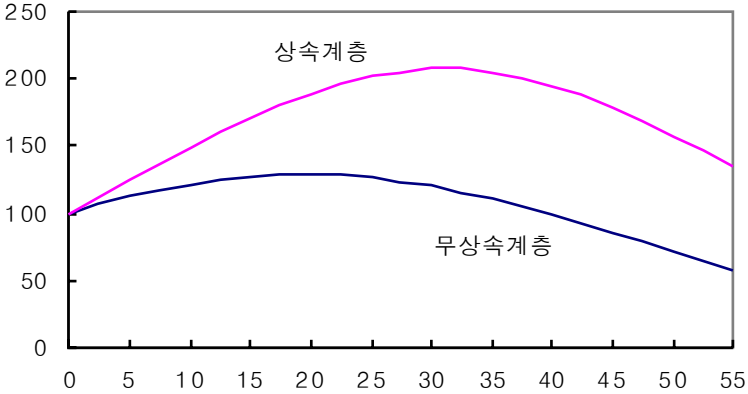
$$\pi_{1,j} = \frac{\exp(8.5497465 + 0.0258115j - 0.000655j^2)}{\exp(8.85497465)}$$

$$\pi_{2,j} = \frac{\exp(8.6412070 + 0.0471570j - 0.0007625j^2)}{\exp(8.6412070)}$$

이와 같이 추정된 계층별 노동생산성 변화는 <그림 3>에서 찾을 수 있다. 생애기간 동안 상속계층의 노동생산성이 무상속계층의 노동생산성보다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3> 계층별 노동생산성 변화

(초기연도=100)



이 외의 생애효용함수와 연계된 모수값과 세대별 연령별 소비, 여가 등 주요 변수는 다음의 생애효용 극대화 문제의 1차 조건의 해로부터 내생적으로 도출하였다. 균등성장을 가정하는 경우 각 계층의 특정 한 세대의 1차 조건의 해를 성장률과 이자율을 감안하여 다른 세대에 대칭적(Systematic)으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i=0$  세대의 효용극대화 문제에 국한하여 연산하였다. 상속계층의 효용극대화 문제는 다음과 같다.<sup>38)</sup>

$$\frac{\partial U}{\partial c} = \left(\frac{1}{1+\rho}\right)^{t-1} V^{1-\theta-\sigma} Z^{1-\rho} \alpha_1 \alpha_2 c_t^{\rho-1} = \lambda P_{c,t} \quad (15)$$

$$\frac{\partial U}{\partial l} = \left(\frac{1}{1+\rho}\right)^{t-1} V^{1-\theta-\sigma} Z^{1-\rho} (1-\alpha_2)^{\alpha_1} l_t^{\rho-1} = \lambda P_{l,t} \pi_t \quad (16)$$

38) 상속을 제외하면 무상속계층에 대한 효용극대화 조건은 쉽게 도출할 수 있어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그리고 설명의 편의를 위해 1차 조건식에서 하첨자  $i$  와  $h$ 는 모두 생략하였다.

$$\frac{\partial U}{\partial b} = \left( \frac{1}{1 + \rho} \right)^{t-1} V^{1-\theta-\sigma} (1 - \alpha_1) b_t^{\sigma-1} = \lambda P_{b,t} (1 - \tau_{b,t}) \quad (17)$$

$$n_t \geq \lambda P_t \pi_t \perp \ell_t \leq \omega \quad (18)$$

$$\sum_{t=0}^t P_t c_t \leq \sum_{t=0}^t P_t [\pi_t (\omega - \ell_t) + \zeta_t] \quad (19)$$

여기서  $\lambda$ 와  $n_t$ 는 생애예산제약과 각 기간에 주어진 시간의 shadow 가격을 의미하며, 균등성장조건하에서는  $P_t = \left( \frac{1}{1 + r_0} \right)^t$ 이기 때문에 모든 변수는 현재가치로 환산된다는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여기서  $r_0$ 은 초기의 균형이자율을 의미한다.

식 (18)로부터 여가의 현재가치가격(Reservation Wage,  $p_t^\ell$ )은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p_t^\ell = \frac{n_t}{\lambda} = p_t^l + \mu_t \text{ if } \ell_t = \omega \quad (20)$$

$$p_t^\ell = p_t^l = P_t \pi_t \text{ if } \ell_t < \omega \quad (21)$$

여가의 현재가치가 노동의 현재가치( $p_t^l$ )보다 크다면 할당된 모든 시간을 여가에 투입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mu_t$ 는 노동의 현재가치(임금)를 초과하는 여가 가치를 의미한다.  $\mu_t$ 가 0이라면 식 (21)에서와 같이 할당된 시간의 일부를 노동에 투입한다는 것을 뜻하며, 식 (18)에서  $n_t = \lambda P_t \pi_t$ 의 조건이 성립된다.<sup>39)</sup>

생애효용극대화 조건과 더불어 캘리브레이션을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이 중 하나가 소비자의 효용극

---

39) 주어진 노동생산성 프로파일 하에서 본 연구에서의 캘리브레이션 결과는 마지막 연령에 도달하면 여가의 가치가 노동의 가치를 초과하여 노동시장으로부터 은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대화의 Duality 문제로부터 도출되는 소비-여가 복합재화의 가격과 상속을 포함한 총소비복합재화의 가격이다.

$$P_{z,t} = [\alpha_2^\rho P_c^{1-\rho} + (1 - \alpha_2)^\rho P_l^{1-\rho}]^{1-\rho} \quad (22)$$

$$P_{v,t} = [\alpha_1^\sigma P_z^{1-\sigma} + (1 - \alpha_1)^\sigma P_b^{1-\sigma}]^{1-\sigma} \quad (23)$$

이와 더불어 2000년도 거시변수와 세대별 변수의 합이 일치하도록 하는 다음과 같은 제약식이 필요하다.

각 기간에 생존하는 모든 세대의 총수요(Aggregate Demand)는 총소득과 순무역수지 불균형(무역수지불균형-재정불균형)의 합과 일치해야 한다.

$$\sum_{i=0}^N (P_{c,t} c_t + P_{b,t} (1 + \tau_t) b_t) = \sum_{i=0}^N \{ P_t^l \pi (w_t - l_t) + P_f + P_{b,t}^r b_{r,t} \} \quad (24)$$

유산상속을 제외한 모든 소득은 소비로 완전히 지출되기 때문에 전 생애를 놓고 보면 생애기간 전체의 보유자산은 0이 된다. 그러나 생애효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소비와 저축을 결정하기 때문에 기간별로는 보유자산이 0보다 클 수 있다. 따라서  $a_t$ 를  $i=0$ 세대의 나이가  $j$ 가 되었을 때 보유한 자산의 현재가치라고 가정하면 이는 총소득의 현재가치에서 소비의 현재가치를 제외한 합과 일치한다.

$$a_t = \sum_{\xi=0}^{t-1} \frac{P[\pi(\omega - 1) + \xi + b_{r,\xi} - c_\xi - (1 - \tau_\xi) b_\xi]}{(1 + r)^\xi} \quad (25)$$

$t=0$ 에 생존하는 세대가 보유한 자산( $m_{\bar{t}}$ )은 식 (36)에서 도출한  $a_j$ 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m_t = a_t \left( \frac{1 + \sigma}{1 + \gamma} \right) \quad (26)$$

여기서  $\bar{z}_i$ 는  $t=0$ 에 생존하는 세대를 의미한다.  $(1 + \gamma)^j$ 로 나누는 것은  $t=0$ 에 생존하는 세대간의 상대적 크기를 반영한 것이며,  $(1 + r_0)^j$ 로 곱하는 이유는 현재의 자산은 태어난 시점  $(-j)$ 에서부터 현재 시점까지 할인되었음을 의미한다.

초기연도에 생존하는 모든 세대의 자산의 합은 SAM 테이블에 나타난 거시변수와 일치해야 한다. 2000년을  $t=0$ 라고 가정하면 SAM 테이블에 나타난 변수간의 항등식과 세대별 자산의 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R_0 + W_0 + Tr_0 - C_0 = I_0 + B_0 - D_0 \quad (27)$$

$$A_0 = \sum m_i^* = (1 + r_0)K_0 + (B_0 - D_0) \frac{1 + r_0}{r_0 - \gamma} \quad (28)$$

이와 더불어  $t=0$  시점에 살고 있는 모든 세대의 소비와 소득의 합은 총수요와 총소득이 일치해야 한다.

$$W_0 = \sum_{j=0}^j \frac{\pi_j (\omega - \ell_j)}{(1 + \gamma_0)^j} \quad (29)$$

$$C_0 = \sum_{j=0}^j \frac{c_j}{(1 + \gamma_0)^j} \quad (30)$$

식 (31)에 나타난 총정부이전지출은 세대별 소득비중으로 추정하였다.

$$\zeta_j = (1 + \gamma_0) Tr_0 \quad (31)$$

---

40) 이에 대한 증명은 Rasmussen and Rutherford(2004)에 잘 정리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균제상태에서 투자, 자본소득, 자본소득은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된다.

$$R = (r_0 + \delta) K \quad (32)$$

$$I = (y_0 + \delta) K \quad (33)$$

외생적으로 주어진 거시변수( $K_0, C_0, B_0, D_0, Tr_0, W_0$ ), 노동생산성( $\pi_{v,t}$ ), 이자율( $r_0$ ), 성장률( $y_0$ ), 감가상각률( $\delta$ )을 가지고 앞에서 서술한 식 (15)~(42)가 동시에 만족되도록 다음의 모수와 변수를 추정하였다. 추정된 모수는 시간 할인율  $\rho$ , 시간 할당량  $\omega$ , shadow price  $\lambda$ ,  $n_j$ 이며, 추정된 변수는 소비, 자산, 여가 및 노동시간과 관련된 변수  $z_j, c_j, a_j, m_i^-, l_j, pz_j$ 이다.

이상에서 추정된 변수는  $t=0$ 에 태어난  $i=0$  세대에 국한된 최적화변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세대의 연령별 최적화 값은  $i=0$  세대의 최적화 값에 이자율과 성장률을 반영하여 대칭적으로 추정하였다.<sup>41)</sup>

기준연도의 소비를 100으로 가정할 때 계층별 생애 소득 및 소비의 경로는 <그림 4>와 <그림 5>에서 찾을 수 있다. 노동생산성 변화와 같이 근로소득은 초기에는 점차 증가하다가 35~45세에 정점을 지나 점차 감소한다. 무상속계층은 75세( $J=50$ )에 은퇴하기 때문에 인생의 마지막 기에 근로소득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상속계층은 무상속계층보다 빠른 65세에 은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생애초기에는 자본소득은 없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자본소득은 점차 커져 인생후반기에 정점에 이르게 된다. 초기에는 근로소득의 대부분을 소비하지만 점차 시간이 흐를수록 소득 증가와 더불어 저축도 증가하게 된다. 소비는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41)  $i=0$  세대의 최적화 값을 가지고 모든 세대의 최적화 값을 대칭적으로 추정하는 것은 단지 균등성장을 가정하였기 때문에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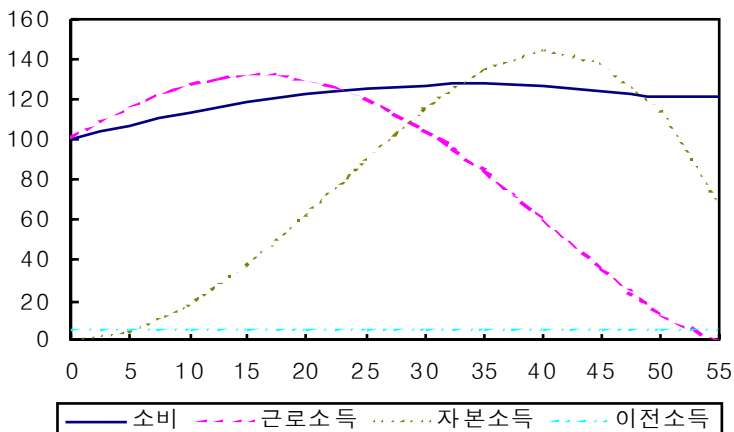
추세를 보이지만 근로소득이나 자본소득과 같이 급격한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저축과 대출을 통해 생애소비를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생애효용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되기 때문이다. 이는 항상소비가설과 일치한다.

무상속계층의 마지막 기의 소득은 자본소득과 이전소득으로 구성되고 이는 소비로 모두 지출된다. 반면 상속계층의 마지막 기의 소득은 자본소득으로 구성되는데 이는 소비와 상속으로 지출된다. <그림 5>에서 보듯이 상속계층은 31~45세 사이에 상속을 받고 인생의 마지막 기에 자녀에게 유산을 상속하게 된다.

<그림 6>은 계층별 노동시간과 여가시간을 보여 주고 있다. 연령별로 할당된 시간(100)이 노동과 여가로 분배되는데, 노동시간은 점차 감소하고 여가시간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상속계층은 70세에 노동시장으로부터 완전히 은퇴하고 무상속계층은 75세에 은퇴한다. 은퇴 이후 노동시간은 0이 되고 여가시간은 100이 된다.

<그림 4> 기준연도 무상속계층의 생애소비 및 소득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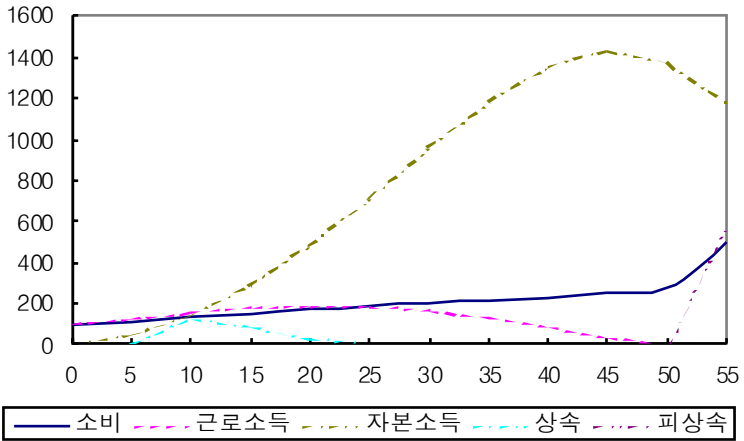
(초기연도 소비=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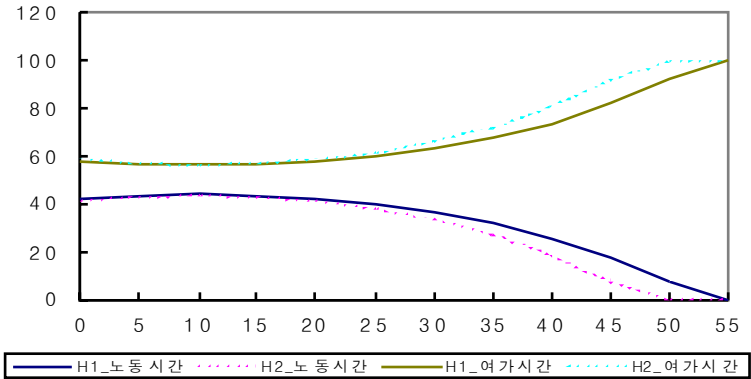
<그림 5> 기준연도 상속계층의 생애소비 및 소득 경로

(초기연도 소비=100)



<그림 6> 계층별 노동 및 여가시간

(시간활동량=100)



## IV. 분석결과

본 연구는 가계를 상속계층과 무상속계층으로 나누고 상속계층에 부과되는 상속세를 40% 인하할 경우의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속세 인하는 우선 상속계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변화는 거시경제 그리고 무상속계층의 경제행위에 영향을 준다. 이와 같은 파급효과는 다시 환류효과를 통해 상속계층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같은 파급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본장에서는 상속계층과 무상속계층의 생애소비 및 소득의 변화를 살펴보고 나아가 거시경제와 계층별 후생변화를 살펴보기로 한다.

### 1. 생애소비 및 소득에 미치는 효과

세대중복모형에서는 매기에 연령이 다른 세대가 중복하여 생존한다. 다음 표와 그림에 나타난 분석결과는 2004년에 경제활동인구로 진입한 세대(20세)가 80세까지 생존하는 동안의 소득 및 소비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상속인의 나이가 31~35세 사이에 상속을 받을 확률은 47.1%이며, 36~40세에 받을 확률은 38.2%, 41~45세에 받을 확률은 14.7%에 달한다. 이는 피상속액이 확률에 따라 동 연령대에 배분된다는 의미이다. 상속세가 40% 인하되면 피상속액은 6.5% 증가하고 상속액은 6.2~6.5% 증가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상속계층의 소비는 생애 평균 0.167% 증가한다. 마지막 기를 제외하고 소비는 연령별로 0.2% 이상 증가한다. 이는 소득

증가효과와 상속세 인하로 인한 시점간 대체효과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상속세가 인하되면 피상속인은 소비 대신 상속을 선호하는 대체효과 때문에 마지막 기의 소비는 0.88% 감소할 전망이다.

소득증가에 따른 상속계층의 근로소득은 감소할 전망이다. 피상속 시점인 마지막 기를 제외하고 소비와 여가는 소득증가와 더불어 증가한다. 그리고 피상속인은 노동시장에서 은퇴를 하였기 때문에 노동공급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여가시간의 증가는 곧 노동시간의 감소를 의미한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실질임금이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시간의 감소로 인해 상속계층의 근로소득은 0.308% 감소할 전망이다.

자본소득은 저축과 연계되며 저축은 미래의 소비와 연계된다. <표 15>에서 보듯이 소비의 증가율은 비교적 완만하지만 자본소득(저축)의 변화는 소비변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변하고 있다. 이는 항상소득가설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저축을 통해 생애 소비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생애효용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되기 때문이다. 즉 상속으로 인해 미래의 소득이 증가할 것이 예상되면 저축을 줄이고 현재의 소비를 늘리는 것이 합리적인 행위가 된다. 따라서 상속을 받기 전 20~25세에는 소비는 0.205% 증가하고 자본소득(저축)은 3.269% 감소하고, 26~30세에는 자본소득(저축)이 2.033% 감소한다. 그리고 상속을 받는 시점부터는 자본소득이 증가하여 30~35세에 약 1% 증가하고 36~40세에는 0.948%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상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41~45세의 자본소득이 0.682% 감소하고, 46~50세는 자본소득이 9.93%까지 감소하다가 이후 자본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상속계층의 생애기간 전체의 자본소득은 기준균형에 비해 8.861%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표 15> 상속세 인하에 따른 생애소비 및 소득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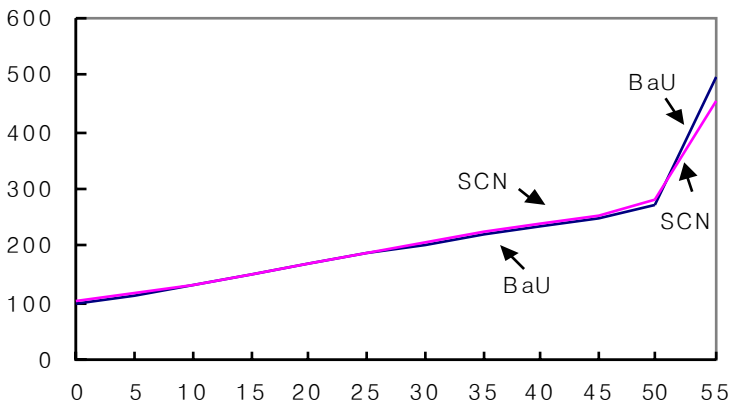
(단위: %)

	나이	상속	피상속	소비	근로소득	자본소득	노동시간	소비&여가
상속계층	0	0.000	0.000	0.205	-0.291	-3.269	-0.684	0.453
	5	0.000	0.000	0.206	-0.264	-2.033	-0.628	0.451
	10	6.480	0.000	0.207	-0.253	1.006	-0.607	0.448
	15	6.293	0.000	0.207	-0.254	0.948	-0.617	0.445
	20	6.202	0.000	0.207	-0.270	-0.682	-0.659	0.442
	25	0.000	0.000	0.206	-0.306	-9.934	-0.745	0.438
	30	0.000	0.000	0.205	-0.376	3.726	-0.906	0.435
	35	0.000	0.000	0.204	-0.517	1.427	-1.228	0.432
	40	0.000	0.000	0.202	-0.877	0.862	-2.049	0.428
	45	0.000	0.000	0.201	-3.069	0.619	-7.054	0.426
	50	0.000	0.000	0.332	0.000	0.394	0.000	0.284
	55	0.000	6.517	-0.880	0.000	2.738	0.000	-0.467
	소계	6.382	6.517	0.167	-0.399	8.866	-0.399	0.157
무상속계층	0	—	—	0.0136	0.0005	-0.1141	-0.0087	0.0094
	5	—	—	0.0144	0.0046	-0.0265	-0.0068	0.0091
	10	—	—	0.0150	0.0093	0.0056	-0.0048	0.0083
	15	—	—	0.0152	0.0140	0.0364	-0.0025	0.0073
	20	—	—	0.0150	0.0185	0.0927	-0.0001	0.0061
	25	—	—	0.0143	0.0228	1.3493	0.0027	0.0048
	30	—	—	0.0133	0.0271	-0.0861	0.0061	0.0034
	35	—	—	0.0119	0.0316	-0.0215	0.0105	0.002
	40	—	—	0.0102	0.0377	0.0037	0.0173	0.0008
	45	—	—	0.0086	0.0520	0.0182	0.0324	-0.0004
	50	—	—	0.0069	0.1177	0.0282	0.0989	-0.0015
	55	—	—	-0.0003	0.0000	0.0402	0.0000	-0.0001
	소계			0.0213	0.0195	0.0888	0.0039	0.0229
합계	6.3822	6.5174	0.0285	0.0045	8.8661	-0.0061	0.02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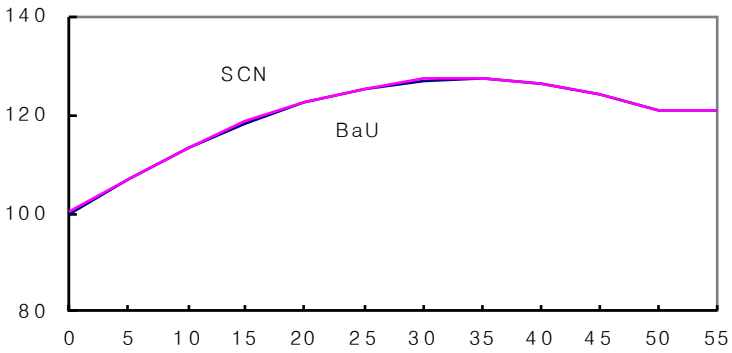
상속계층의 경제행위 변화는 다음 절에 나타난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상속세 인하로 발생하는 거시경제 여건의 변화는 무상속계층의 경제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무상속계층의 소비는 미미하나마 증가하여 생애 전체의 소비가 상속세 인하로 인해 0.021% 증가할 전망이다. 상속계층과 달리 근로소득은 증가하고 있다. 이는 GDP 증가로 인해 자본과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004년에 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된 상속계층과 무상속계층 전체의 소비는 0.029%, 근로소득은 0.0045%, 자본소득은 8.661%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소비와 근로소득은 상대적으로 인구비중이 높은 무상속계층의 변화에 주로 영향을 받는 반면 자본소득은 인구비중은 낮지만 자본 보유량이 많은 상속계층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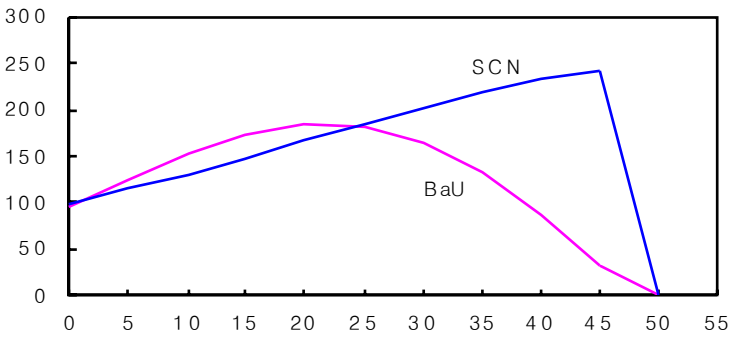
<그림 7> 상속계층의 생애소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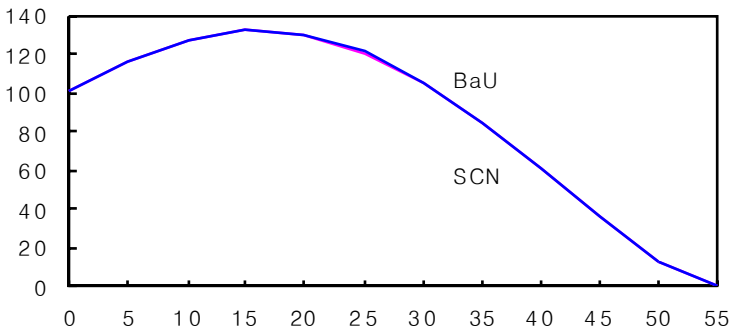
<그림 8> 무상속계층의 소비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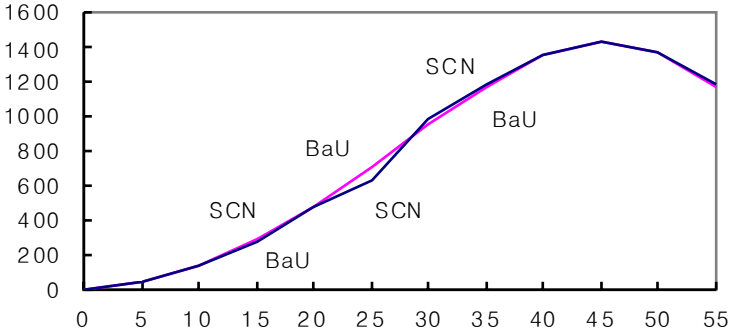
<그림 9> 상속계층의 근로소득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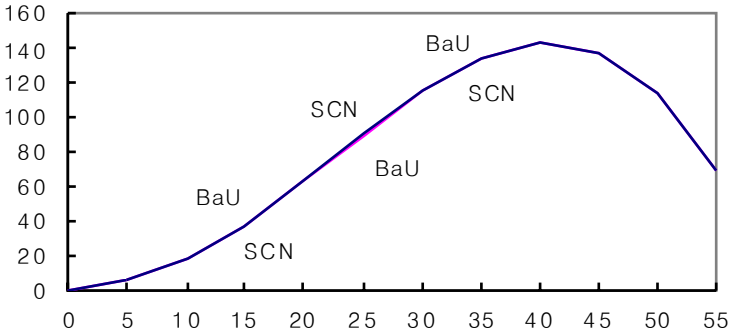
<그림 10> 무상속계층의 근로소득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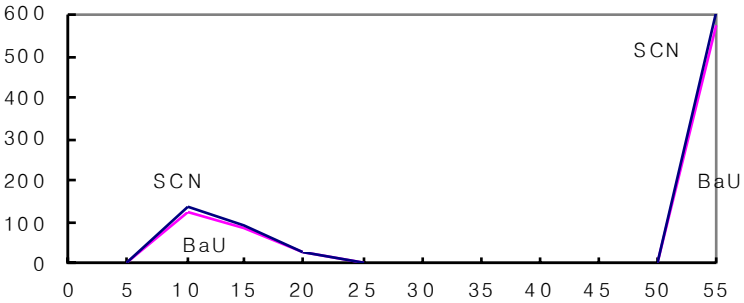
<그림 11> 상속계층의 자본소득(저축)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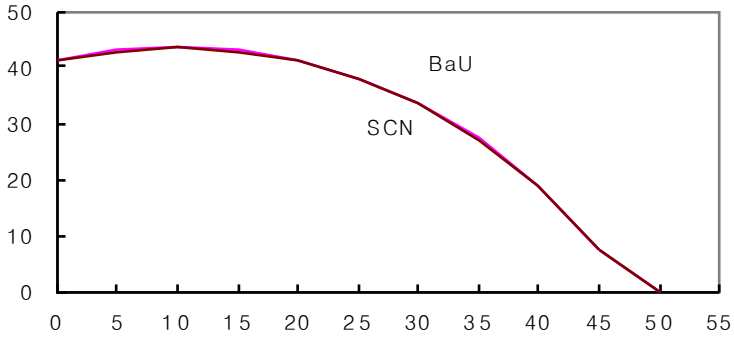
<그림 12> 무상수계층의 자본소득(저축)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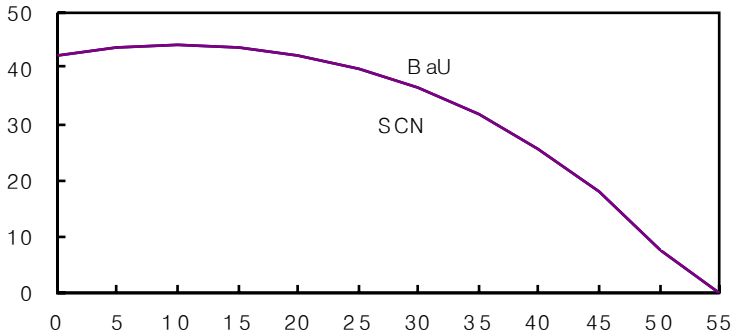
<그림 13> 상속계층의 상속변화



<그림 14> 상속계층의 노동시간 변화



<그림 15> 무상속계층의 노동시간 변화



## 2.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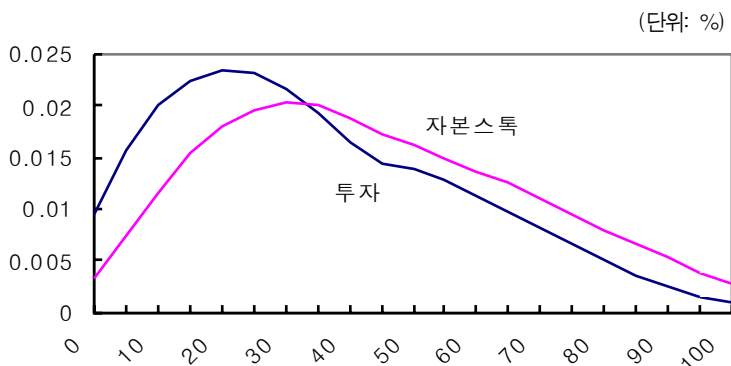
다음은 상속세 인하에 따른 거시경제변수의 변화를 살펴보기로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상속세 인하에 따른 생애소비 및 생애소득 변화는 연령별로 상이하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특정세대의 생애기간 경제행위를 살펴봄으로써 특정연도에 공존하고 있는 세대



들의 경제행위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즉 현재 경제활동인구에 진입한 세대의 미래의 경제행위는 현시점에 생존하는 고령층의 경제행위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게 된다. 따라서 상속세 인하에 따른 특정시점의 거시변수의 변화는 앞서 살펴본 특정세대의 생애주기의 사결정이 복합되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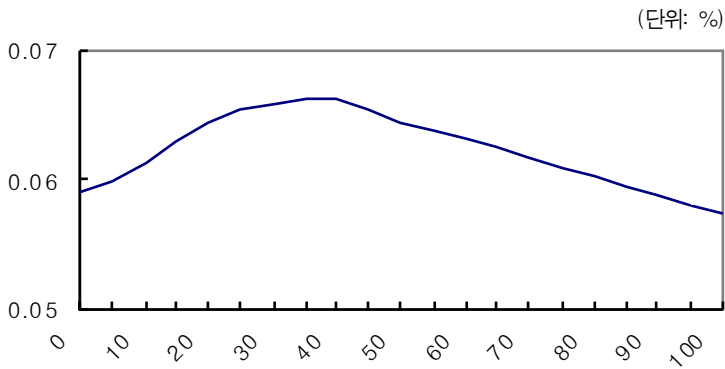
생애기간의 자본소득 변화에서 살펴보았듯이 생애 초기에는 자본소득이 감소하지만 상속소득의 증가와 더불어 점차 저축이 증가하여 생애 전체의 자본소득은 증가한다. 이와 같이 현시점에 생존하는 상속계층의 저축행위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상속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젊은 계층의 저축은 감소하지만 중장년층의 저축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 전체의 투자와 저축은 <그림 16>에서 보듯이 증가한다. 그림에서 보듯이 자본소득이 투자보다 지체되어 변동하는 이유는 다음 기의 자본소득은 현재의 투자증가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30년 이후 점차 투자와 자본소득이 감소하는 이유는 자본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일정시점 이후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체감하는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16> 투자 및 자본소득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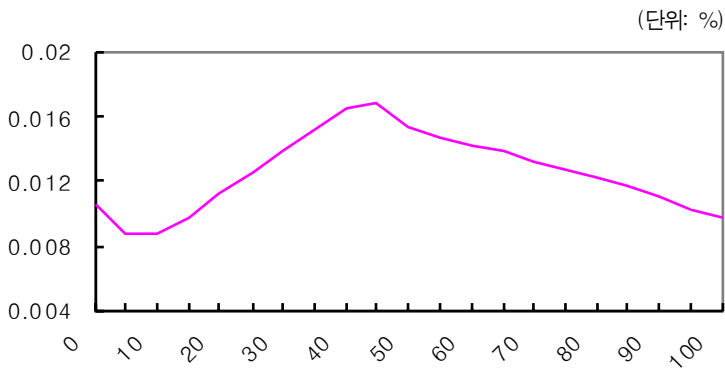


<그림 17>을 보면 상속세 인하는 노동공급을 줄이지만 실질임금이 상승하여 근로소득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살펴 보았듯이 근로시간은 상속계층을 중심으로 감소하고 무상속계층의 근로시간은 증가한다. 따라서 상속계층의 근로소득 감소에도 불구하고 무상속계층의 근로소득이 증가하여 경제 전체의 근로소득은 증가할 전망이다.

<그림 17> 노동 및 실질임금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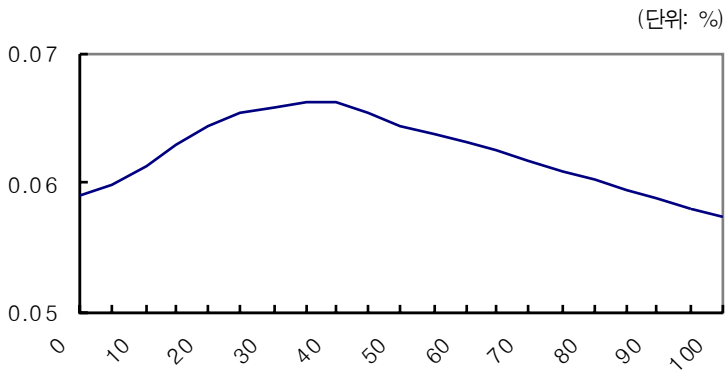


<그림 18> 소비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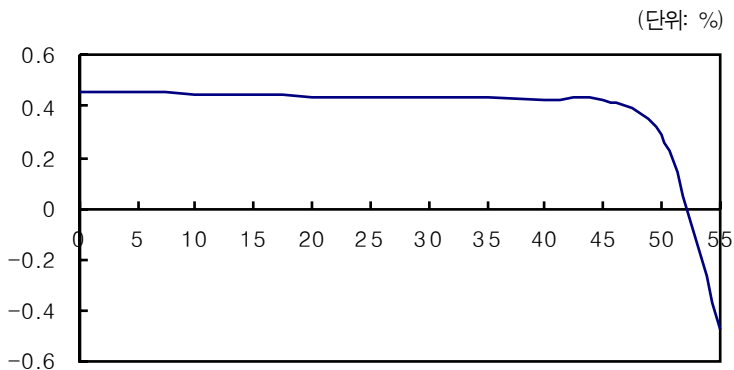


소득증가로 인해 최고연령 때를 제외하고 상속계층과 무상속계층의 생애소비는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18>에서 보듯이 이러한 생애소비 패턴이 매기 반영되어 소비는 최고 0.017% 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소비 및 투자의 증가는 GDP 증가로 이어져 <그림 19>에서 보듯이 GDP는 기준균형에 비해 모든 기간에서 0.06% 내외로 증가할 전망이다.

<그림 19> GDP 변화



<그림 20> 상속계층의 소비&여가 복합재화 소비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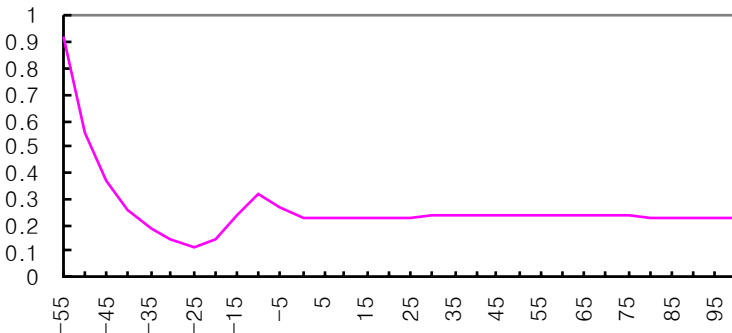


### 3. 사회적 후생에 미치는 효과

<그림 21>과 <그림 22>는 상속세 인하에 따른 상속계층과 무상계층의 세대별 후생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기준연도 2004년에 생존하는 최고령 세대는 -55의 색인으로 표시된다. 상속계층 중 상속세 인하로 인해 2004년에 피상속액이 증가하는 계층은 “-55”세대 하나이다. “-55”세대는 다음 기에는 생존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가 인하되면 마지막 기의 효용극대화 문제와 관련된다. 시점간 대체효과나 여가와 노동의 선택문제는 “-55”세대와는 연관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여건이 반영되어 “-55”세대의 후생증가 효과가 다른 세대에 비해 큰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21> 상속계층의 세대별 후생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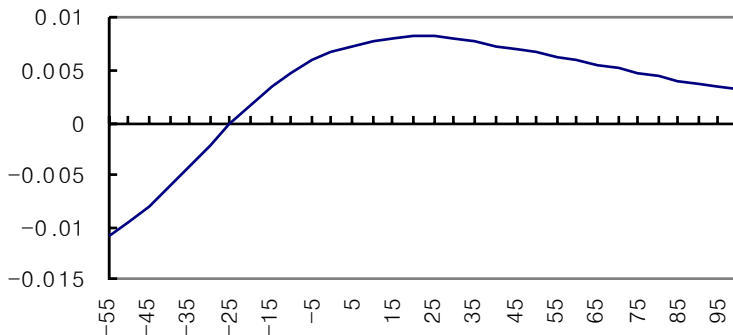
“-45”~“-25” 세대는 “-55”세대와 마찬가지로 재산을 자녀에게 상속하지만 부모로부터 받는 상속은 이미 지나간 과거의 문제이기 때문에 효용극대화 문제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55”세대와는 달리 다음 기에도 생존하기 때문에 소비-여가에 대한 시점

간 대체효과가 발생하여 상속세 인하에 따른 후생증대효과가 분산되어 나타나 “-25”세대의 후생증가는 0.011%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2004년도에 상속을 받는 세대는 “-20”, “-10”, “-5” 세대(연령이 30세에서 45세에 해당되는 세대)부터이다. 이들 세대는 상속받는 재산의 증가로 후생이 증가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0”세대, 즉 2004년에 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된 세대부터는 상속세 인하에 따른 후생증대 효과가 0.22% 내외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상속세 인하로 인해 기존 균형에서 새로운 균제상태로 이전되는 이전효과(Transition Effect)가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그림 22> 무상속계층의 후생변화

(단위: %)



상속계층과 달리 무상속계층의 “-55”~“-25” 세대의 후생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상속세 인하로 인해 정부지출과 이전지출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들 연령층의 후생감소가 유발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이들 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상속세

인하로 발생하는 자본소득과 근로소득의 증가효과를 누릴 수 있는 기간이 짧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0”세대부터는 상속세 인하에 따른 파급효과가 모두 반영되어 기준균형에 비해 후생이 증가할 전망이다.

상속계층과 무상속계층을 합한 총후생증가는 <표 16>에서 찾을 수 있다. 상속세를 40% 인하하면 연평균 세수입은 3,811억원씩 감소한다. 이로 인해 총 사회적 후생은 연 평균 1,685억원씩 증가한다. 이는 세수입 감소를 보상하고 남은 추가적인 사회적 편익의 증가로 해석할 수 있다. 추가적인 사회적 후생증가의 81.7%인 1,378억원은 상속계층에 귀착되고, 나머지 18.2%인 307억원은 무상속계층에 귀착된다. 따라서 상속세 인하로 발생하는 후생증가는 무상속계층보다 상속계층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부의 편중효과가 발생하여 소득분배의 형평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상속세 인하는 모든 계층의 후생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파레토 개선의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반대로 상속세를 인상한다면 모든 계층의 후생은 감소하는 가운데 상속계층의 후생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감소하여 소득분배가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계층의 후생이 감소하면서 소득형평성이 개선되는 전형적인 하향평준화의 결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표 16> 상속세 인하에 따른 연평균 사회적 후생증가

(단위: 십억원)

	현재가치의 연평균 순후생 증가	연평균 세수입 감소
상속계층	137.8	381.1
무상속계층	30.7	0
합계	168.5	381.1

## 4. 민감도분석

앞서 언급하였듯이 상속세 인하에 따른 파급효과는 시점간 대체탄력성과 소비&여가와 상속간의 대체탄력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sup>42)</sup> 따라서 본 절에서는 시점간 대체탄력성과 소비&여가와 상속간의 대체탄력성 변화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지금까지 시점간 대체탄력성( $1/\theta$ )은 Kotilkoff and Auerbach (1987)와 같이 0.25로 설정하고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대적 위험회피를 나타내는  $\theta$ 는 1.5~4로 추정되고 있다.<sup>43)</sup> 다시 말해서 시점간 대체탄력성( $1/\theta$ )은 0.667~0.25 범위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시점간 대체탄력성을 0.667, 0.4, 0.25로 산정하고 이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하기로 한다.

앞서 보여 준 분석결과는 소비와 여가의 대체탄력성이 0.8인 경우이다. Kenc and Sayan(2001)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소비-여가 복합재화와 상속간의 대체탄력성은 0.5~0.9의 범위를 갖는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여가와 상속의 대체탄력성을 0.4, 0.6, 0.9, 1.1로 산정하고 민감도 분석을 하였다.

### (1) 시점간 대체탄력성

상속세가 인하되면 <그림 23>에서 보듯이 피상속시기의 소비&여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상속으로 대체된다. 따라서 피상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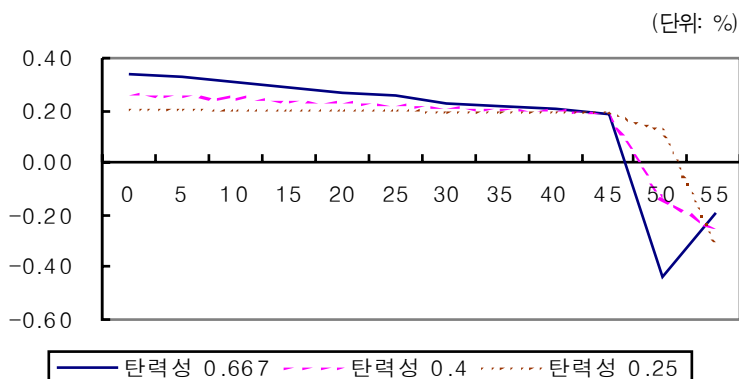
---

42) 문형표(1990)는 시점간 탄력성과 소비와 상속간의 탄력성에 따라 상속세 인상효과가 매우 상이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43) 구분열(1992)은  $\theta$ 를 1.74로 추정하였으며, 남주하(1993)는 2.5, 이민원(1992)은 1.44로 추정하였다. 외환위기 이후의 자료를 이용한 최근 연구인 김영덕(2006)은  $\theta$ 를 3.876으로 추정하였다.

시의 소비&여가가 감소하면 시점간 대체탄력성이 높을수록 생존 시의 소비-여가가 증가하는 시점간 대체가 상대적으로 커지게 된다. 더욱이 실질 상속액의 증가는 생존시의 소비&여가를 더욱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시점간 탄력성이 커지면 피상속 시의 소비&여가의 감소 폭은 상대적으로 더 커지게 되며 생존시의 소비&여가의 증가폭도 더 커지게 된다.

<그림 23> 시점간 대체탄력성 변화에 따른 상속계층의 생애소비&여가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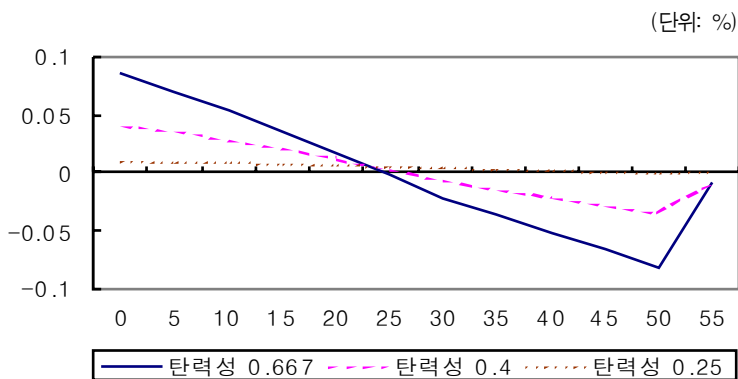


상속세 인하에 따른 상속계층의 소비변화는 무상속계층의 소비 변화와 더불어 총소비변화를 결정하게 된다. 상속세 인하에 따른 무상속계층의 소비&여가 변화율은 상속계층의 소비&여가 변화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으나 무상속계층의 인구비중이 높기 때문에 절대액 측면에서 오히려 큰 변화를 보이게 된다. 따라서 거시경제변수는 오히려 무상속계층의 의사결정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된다. 시점간 대체탄력성 변화에 따른 총소비의 변화는 <그림 25>에 나타나 있다. 시점간 대체탄력성이 높을수록 상속세 인하에 따른 소비증가효과는 더욱 커지고 있으며, 시점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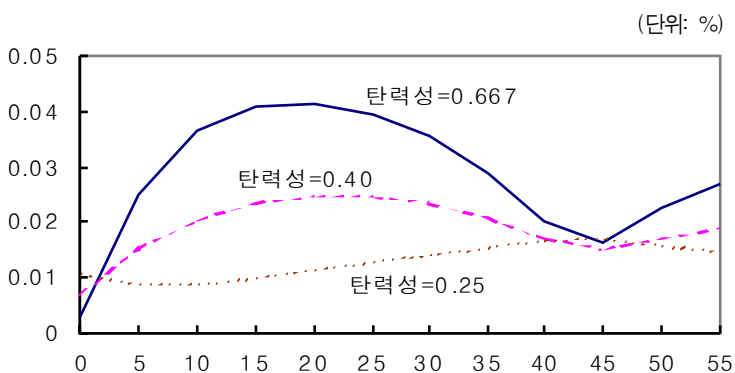


빠를수록 이러한 효과는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그림 24> 시점간 탄력성 변화에 따른 무상속계층의 생애소비&여가 변화



<그림 25> 시점간 대체탄력성 변화에 따른 소비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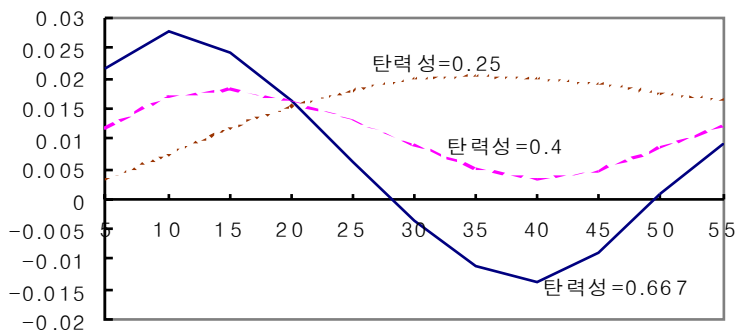
상속계층과 무상속계층의 저축변화가 경제 전체의 투자를 변화시키고 나아가 자본스톡을 변화시키게 된다. <그림 26>에서 보듯이 탄력성이 높을수록 상속세 인하에 따른 자본스톡은 전반기에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후반기에는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시점간 대체탄력성에 따른 계층별 후생변화는 매우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표 17>에서 보듯이 탄력성이 커질수록 상속계층과 무상속계층의 후생은 모두 증가하지만 상대적으로 무상속계층의 후생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한다. 이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무상속계층의 인구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총 사회적 후생은 시점간 대체탄력성이 0.25일 때 1,684억원이던 것이 탄력성이 0.667로 커지면 6,683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경험적으로 인정되는 탄력성 범위 내에서 상속세 인하가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반대로 상속세를 인상한다면 경제의 효율성 악화시켜 상속계층뿐만 아니라 무상속계층의 후생도 함께 악화시키는 하향평준화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더욱이 시점간 대체탄력성의 정도에 따라 상속세 인하는 소득분배를 더욱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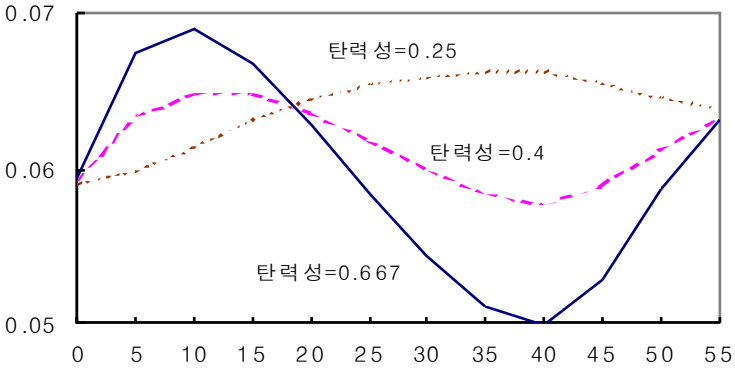
<그림 26> 시점간 대체탄력성에 따른 자본스톡 변화

(단위: %)



<그림 27> 시점간 탄력성에 따른 GDP 변화

(단위: %)



<표 17> 시점간 대체탄력성 변화에 따른 후생변화

(단위: 십억원)

$1/\theta$	0.667	0.4	0.25
상속계층	184.66	158.01	137.79
무상속계층	483.67	231.45	30.67
합계	668.33	389.46	168.46

## (2) 상속과 소비&여가 복합재화간 대체탄력성

소비-여가와 상속간의 대체탄력성이 작을수록 피상속 시의 상속과 소비&여가 재화간 대체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진다. <표 18>에서 보듯이 실증분석 결과 대체탄력성이 0.5보다 클 경우 상속세가 인하되면 상속액은 기준균형에 비해 증가하지만, 탄력성이 0.5 이하로 떨어지면 상속은 기준균형에 비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된다.<sup>44)</sup>

<표 18> 소비&여가와 상속의 대체탄력성 변화에 따른 피상속액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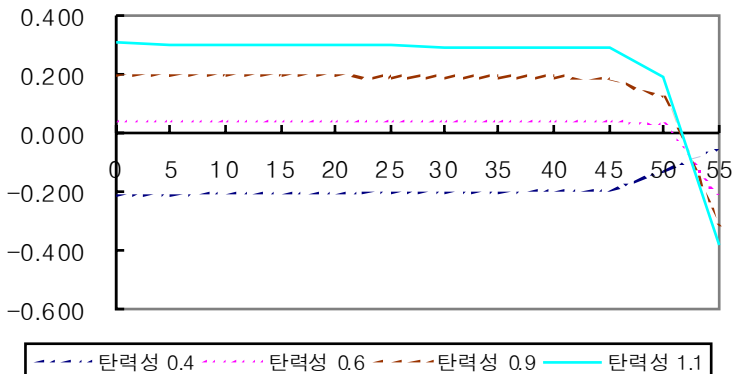
(단위: %)

	탄력성 0.4	탄력성 0.6	탄력성 0.9	탄력성 1.1
피상속액 변화	-17.1	2.6	6.5	12.8

<그림 28>에서 보듯이 피상속 시의 소비&여가에 대한 수요는 등 대체탄력성이 낮을수록 감소율이 작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체탄력성이 0.4일 때 상속은 기준균형에 비해 감소하고 있지만 소비&여가의 재화가 기준균형보다 낮은 수준에 있다. <그림 29>에서 보듯이 무상속계층의 소비&여가에 대한 수요는 상속계층의 수요와는 매우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점간 대체탄력성이 낮(높)을수록 무상속계층의 소비&여가에 대한 수요가 높(낮)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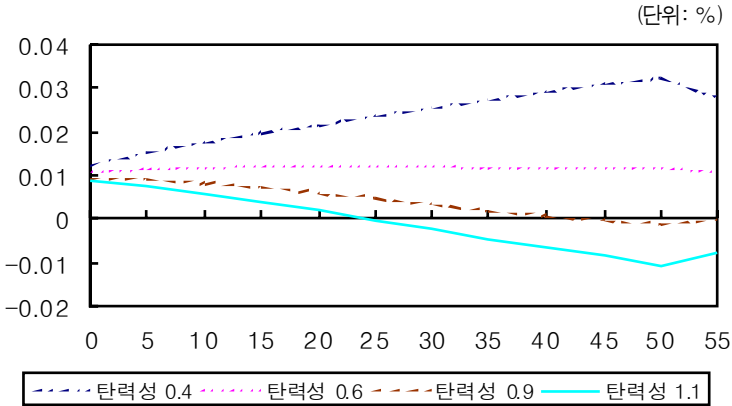
<그림 28> 소비&여가와 상속간의 대체탄력성 변화에 따른 상속계층의 소비&여가 변화

(단위: %)



44) 소비&여가와 상속간의 대체탄력성이 0.4일 경우 상속은 기준균형에 비해 약 17%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29> 소비&여가와 상속간의 대체탄력성 변화에 따른  
무상속계층의 소비&여가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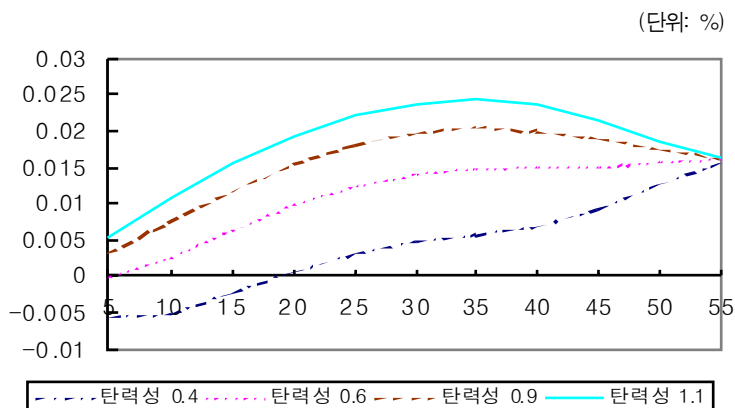


소비&여가와 상속간의 대체탄력성이 높을수록 상속이 증가하기 때문에 상속인의 저축도 이에 상응하여 변하게 된다. 결국 소비&여가와 상속간의 대체탄력성이 높을수록 상속세 인하로 인한 GDP의 증가율도 커질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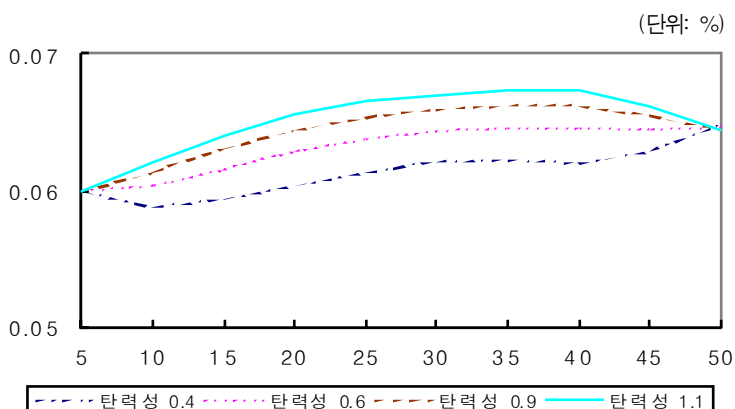
<표 19>에서 보듯이 상속세 인하로 인한 상속계층의 후생은 상속과 소비&여가 복합재화간 대체탄력성이 높을수록 증가할 전망이다. 무상속계층의 후생은 상속계층의 후생과 반대로 변하고 있다. 만약 상속세가 인상된다면 이와 정반대의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 상속세 인상으로 인해 무상속계층의 후생이 증가할 수 있는 경우는 상속과 소비&여가 복합재화간 대체탄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국한된다. 그러나 상속과 소비&여가 복합재화간 대체탄력성이 매우 낮은 0.4나 매우 높은 1.1은 그동안의 경험적 연구와 일치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수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형표(1990)가 주장하였듯이 상속세 인상으로 저소득계층의 후생을 증가시키므로써 소득분배의 형평성을 재고할 수 있는 있는 경우는

오직 대체탄력성이 비정상적으로 클 때 가능하다. 경험적으로 합당한 보수값 하에서는 상속세 인상은 오히려 사회후생을 낮추는 하향평준화 효과만을 갖게 될 것으로 평가된다.

<그림 30> 소비&여가와 상속간의 대체탄력성 변화에 따른 자본스톡 변화



<그림 31> 소비&여가와 상속간의 대체탄력성 변화에 따른 GDP 변화



<표 19> 상속과 소비&여가 복합재화간 대체탄력성 변화에 따른 후생변화

(단위: 십억원)

탄력성	0.4	0.6	0.9	1.1
상속계층	-110.21	41.91	137.79	203.53
무상속계층	313.54	140.32	30.67	-44.77
합계	203.33	182.23	168.46	158.76





제5장

결 론



상속과세의 지지자와 반대론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세운 논거는 경제학적 관점에서부터 심지어 철학적 정의론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있다. 이를 항목별로 하나하나 평가하면서 반론을 제기하는 일은 매우 힘든 작업이지만 상속과세제도의 합리적인 개편을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필수적인 작업이기도 하다. 납세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미국의 경우 상속세가 저축, 노동공급, 세수입 변화에 미치는 효과뿐만 아니라 징수에 따른 행정 및 순응비용 등 다양한 방향에서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러한 노력이 미국정부로 하여금 2001년에 유산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하다가 2011년에 완전히 폐지하는 입법을 단행하도록 하는 결실로 이어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경유착, 불법 및 탈법으로 특정계층에 부가 집중되었다는 논리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는 동안 상속과세를 폐지 또는 완화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와는 달리 세수도 보잘 것이 없는 상속세와 증여세 강화에만 매달려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과세와 관련하여 축적된 연구의 미비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상속과세와 관련해서는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몇몇 연구가 수행되어 왔지만 상속과세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다룬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그동안 강화 일변도로 치달던 상속과세에 대한 과학적인 대안제시를 위한 출발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상속과세의 찬반양론과 주요국의 입법 동향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하향평준화를 가져오는 우리의 상속과세제도를 세계화의 추세에 걸맞게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적 국경이 낮아지는 글로벌시대에 상속과세를 통해 경제적 기회균등을 실현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주요 선진국들은 상속세를 폐지하고 있다. 불합리하고 과도하게 높은 부담을 지우는 상속과세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그러한 나라에서는 저축을 감소시키고 투자재원의 축적을 저해하면서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 자본자유화에 편승하여 국부가 국외로 유출, 심지어는 부를 많이 소유한 계층이 국적을 상속과세가 없거나 낮은 나라로 옮길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또한 상속세 인하는 경제적 효율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무상속계층의 후생도 함께 증진시킬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더욱이 경험적으로 인정되는 시점간 대체탄력성 범위 내에서 상속세 인하가 효율성뿐만 아니라 소득분배의 형평성도 함께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상속세가 현행 대비 40% 인하될 경우 상속계층의 후생은 연평균 약 1,378억~1,847억원 증가하고 무상속계층의 후생은 307억~4,837억원 증가하여 총 사회적 후생은 1,685억~6,683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반대로 상속세 강화는 경제의 효율성을 악화시켜 상속계층뿐만 아니라 무상속계층의 후생도 함께 악화시키는 하향평준화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상속세 인상으로 저소득계층의 후생을 증가시킴으로써 소득분배의 형평성을 재고할 수 있는 있는 경우는 오직 대체탄력성이 비정상적으로 클 때 가능하다. 부동산 및 주식 시장의 호황 등으로 인해 상속과세가 상위 1% 계층에 국한된 문제만은 아니다. 더욱이 효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가운데 하향평준화 또는 소득재분배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상속과세에 대한 개편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을 통한 상속세 인하의 경제적 파급효과뿐만 아니라 제도적 측면에서 우리나라 상속과세의 문제점과 우리의 여건에 맞는 상속과세제도의 개편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았

다. 우리나라는 아직 상속과세 폐지가 야기할 조세 회피로를 봉쇄하는 데 만족할 정도의 소득세제상의 자본이득 과세장치를 정비·시행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실정에서는 상속과세제도의 폐지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금융실명제 등 경제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사회적 조세인프라를 완비한 후 상속과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과세로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세인프라가 구축되기 전까지는 세율인하뿐만 아니라 제도개선을 통해 상속세과세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 제도적 개선으로는 현행 유산과세형을 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하는 정도의 개혁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원래 취득과세형이 응능부담의 원리·부의 집중억제라는 정책목표와 조화되는 과세유형이기 때문이다. 또한 조세법리주의에 위배되고 과세당국에게 폭넓은 재량권을 부여하는 완전포괄주의에서 열거주의 과세유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나아가 현행 제도상 비합리적 법조문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작업도 병행되어야 한다. 저가양수·고가양도 차익에 대한 증여과세는 소득세로 대체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비상장주식의 상장시세차익에 대한 증여과세는 자본이득세로 대체하고, 증여세 과세 후 개발이익 등에 대한 증여과세는 자본이득세로 대체할 필요성이 있으며, 부동산 무상사용수익은 증여세가 아니라 소득세로 과세해야 한다.

그동안 상속과세의 논의를 살펴보면 과학적인 연구를 기반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정경유착, 불법 및 탈법으로 특정계층에 부가 집중되었다는 국민정서에 호소하는 정치적 논리로 접근하여 왔다. 바람직한 상속과세제도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분석틀을 이용하여 개편이 가져올 효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본 연구는 세대중복형모형을 통해 상속세 인하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되었다는 점에서 의의

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보다 신뢰성 있는 입력데이터를 구축하는 동시에 보다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별납세자료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있어 상속계층과 무상속계층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힘든 상태이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에 나타난 자산보유규모를 기준으로 상속계층과 무상속계층을 구분하였다. 따라서 『국세통계연보』에 나타난 상속세 납세자 분포와 본 연구의 상속계층의 분포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한국노동패널조사 기간(8년)이 짧아 계층별 생애소득, 생애노동공급, 생애자본소득 경로를 정확히 추정할 수 없다는 것도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상속세 인하에 따른 정부수입 감소는 정부지출 축소로 충당한다고 가정하고 분석을 하였다. 이 밖에도 상속세 인하-자본소득세 인상, 상속세 인하-소비세 인상, 상속세 인상-근로소득세 인상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한 분석이 요구된다. 이는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 두기로 한다. 또한 상속세 인하에 따른 기업의 지배구조 변화, 자본유출, 상속세의 행정 및 순응비용 등 다양한 방향에서의 연구가 향후 병행될 때 상속세와 관련된 건전한 논쟁이 가능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구본열, 「소비에 근거한 CAPM의 실증적 연구」, 『재무관리연구』, 한국재무관리학회, 1992, pp.1-22.
- 남주하, 「소비준거 자산가격모형을 이용한 소비행태의 분석: 소비의 내구성과 습관성」, 『경제학연구』, 한국경제학회, 1997, pp.1121-1166.
- 문형표, 「相續稅에 있어서의 衡平과 效率性의 乖離」, 『한국개발연구』, 제12권 제4호, 한국개발연구원, 1990.
- 이민원, 「소비변동의 함축성: 항상소득가설과 유동성제약」, 『경제학연구』, 한국경제학회, 1992, pp.469-489.
- 전영준, 「CGE 모형을 이용한 법인세의 성장 및 분배 효과분석」, 『경제분석』, 한국은행, 2003.
- 정권섭, 「토지소유권의 본질에 관한 소고」, 『민법학의 현대적 과제』, 서울: 박영사, 1987.
- 최명근, 『상속과세 유형전환 및 합리화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2002.
- 최명근, 『상속과세제도의 합리적 개편방안』, 시장경제 ISSUE PAPER, 한국경제연구원, 2006.
- 최진석, 「위험회피, 위험증가 효과와 예비적 저축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mimeo, 2006.
- Andreoni, James, “Giving with Impure Altruism: Applications to Charity and Ricardian Equivalence,” *Journal of*

- Political Economy*, 97(6), 1989, pp.1447-1458.
- Astrachan, Joseph H., and Roger Tutterow, "The Effect of Estate Taxes on Family Business: Survey Results," *Family Business Review*, 9(3), 1996, pp.303-314.
- Auerbach, A. J. and L. J. Kotlikoff, *Dynamic Fiscal Polic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 Beach, William W., "Time to Eliminate the Costly Death Tax," *Executive Memorandum*, The Heritage Foundation, 2000.
- Becker Gary S. and Nigel Tomes, "Human Capital and the Rise and Fall of Families," *Journal of Labor Economics*, 4(3, part 2), 1986, pp.s1-s39.
- Bernheim, B. Douglas, "Does the Estate Tax Raise Revenue?," Laurence H. Summers ed., *Tax Policy and the Economy*, 1, 1987, pp.113-138.
- \_\_\_\_\_, "How Strong Are Bequest Motives: Evidence Based on Estimates of the Demand for Life Insuranc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9(5), 1991, pp.899-927.
- Bernheim, B. Douglas, Andrei Shleifer, and Lawrence H. Summers, "The Strategic Bequest Motiv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3(6), 1985, pp.1045-1076.
- Blinder, Alan S., "Intergenerational Transfers and Life Cycle Consumption,"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66(2), 1976, pp.87-93.
- Carroll, Christopher D., "Why Do the Rich Save So Much?," Joel B. Slemrod ed., *Does Atlas Shrug?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Taxing the Rich*, Russell Sage



- Foundation and Harvard University Press, 2000.
- Cooper, George, *A Voluntary Tax?: New Perspectives on Sophisticated Estate Tax Avoidance*, The Brookings Institution, 1979.
- Cox, Donald, "Motives for Private Income Transfer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5(3), 1987, pp.508-546.
- Gale William G. and Joel Slemrod, *The Economics of the Estate Tax*, Joint Economic Committee, December 1998.
- \_\_\_\_\_, *Rethinking the Estate and Gift Tax*, The Brookings Institution, 2001.
- Gale William G. and John Karl Scholz, "Intergenerational Transfers and the Accumulation of Wealth,"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8(4), 1994, pp.145-160.
- Gale William G. and Maria Perozek, "Do Estate Taxes Reduce Saving?," Gale William G. and Joel Slemrod ed., *Rethinking the Estate and Gift Tax*, The Brookings Institution, 2001.
- Hurd M., "Savings of the Elderly and Desired Bequests," *American Economic Review*, 77(3), 1987, pp.298-312.
- Kaplow, Louis, "A Framework for Assessing Estate and Gift Taxation," *The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2000.
- \_\_\_\_\_, "A Framework for Assessing Estate and Gift Taxation," Gale William G. and Joel Slemrod ed., *Rethinking the Estate and Gift Tax*, The Brookings Institution, 2001.
- Kenc T. and S. Sayan, "Transmission of Demographic Shock

- Effects from Large to Small Countries: An Overlapping Generations CGE Analysis," *Journal of Policy Modelling*, 23(6), 2001, pp.677-702.
- Kesti Juhani and Claes H. Balle, "Gibraltar: B-Individual," *European Tax Handbook*, Amsterdam: IBFD, 2000.
- Kotlikoff, Laurence J., "Estimating the Wealth Elasticity of Bequests from a Sample of Potential Decedents," Laurence J. Kotlikoff ed., *What Determine Savings?*, Cambridge, Mass.: MIT Press, 1989.
- Kotlikoff, Laurence J. and Lawrence H. Summers, "The Role of Intergenerational Transfers in Capital Accumula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9(4), 1981, pp.706-732.
- Laitner, John, "Simulating the Effects on Inequality and Wealth Accumulation of Eliminating the Federal Gift and Estate Tax," Gale William G. and Joel Slemrod ed., *Rethinking the Estate and Gift Tax*, The Brookings Institution, 2001.
- McGarry, Kathleen and Robert F. Schoeni, "Transfer Behavior in the Health and Retirement Study: Measurement, and the Redistribution of Resources Within the Family," *Journal of Human Resources*, 30(5), 1995, pp.s184-s226.
- Menchik, Paul L., "Primogeniture, Equal Sharing, and the U.S. Distribution of Wealth,"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94(2), 1980, pp.299-316.
- \_\_\_\_\_, "Unequal Estate Division: Is It Altruism, Reverse Bequests, or Simply Noise?," Denis Kessler and Andre Masson ed., *Modeling the Accumulation and Distribution*

- of Wealth*, Oxford: Clarendon Press, 1988.
- Modigliani F. and Ando A., "The life cycle hypothesis of saving: Aggregated implications and tests," *American Economic Review*, 53, 1963, pp.55-84.
- Modigliani F. and Brumberg R., "Utility analysis and the consumption function: An interpretation of cross-section data," Kurihara K.K., ed. *Post-Keynesian Economics*, New Brunswick, NJ: Rutgers University Press, 1954.
- Perozek, Maria G., "The Implications of a Dynamic Model of Altruistic Intergenerational Transfers," Wisconsin, 1996.
- Rasmussen Tobias N. and Rutherford Thomas F., "Modeling Overlapping Generation in a Complementarity Format," *Journal of Economic Dynamics and Control*, 28(7), 2004, pp.1383-1409.
- Shoup, Carl S., *Federal Estate and Gift Taxes*,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1966.
- Shultz, William J., *The Taxation of Inheritance*, Boston: Houghton Mifflin, 1926.
- Slemrod, Joel and Shlomo Yitzhaki, "Integrating Expenditure and Tax Decisions: The Marginal Cost of Funds and the Marginal Benefit of Projects," *National Tax Journal*, 54(2), 2001, pp.189-201.
- Stiglitz, Joseph, "Notes on Estate Taxes, Redistribution, and the Concept of Balanced Growth Path Incidenc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6(2), 1978, pp.s137-s150.
- Tomes, Nigel, "Inheritance and Inequality within the Family: Equal Division among Unequals, or Do the Poor Get

More?," Denis Kessler and Andre Masson ed., *Modeling the Accumulation and Distribution of Wealth*,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Welch F., "Effect of Cohort Size on Earnings: The Baby Boom Babies Financial Bus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7(5), 1979, pp.s65-s97.

Wilhelm, Mark O., "Bequest Behavior and the Effect of Heirs' Earnings: Testing the Altruistic Model of Bequests," *American Economic Review*, 86(4), 1996, pp.874-892

『국세통계연보』, 2004.

『조세개요』, 2003. 6.

한국노동패널조사, 2000.

『한국통계연감』, 2005.

American Council for Capital Formation, 2000, 2005

Congress Budget Office, "Effects of the Federal Estate Tax on Farms and Small Business," 2005.

McCaffery, Deathtax, [http://www.deathtax.com/death-tax/art\\_24.htm](http://www.deathtax.com/death-tax/art_24.htm)

The President's Agenda for Tax Relief, 2001.

Washingtonpost, "Core of Original Bush Plan Remains Intact Despite Tinkering," May 26, 2001. p.A01.

# Abstract

## Does Inheritance Tax ensure Equal Economic Opportunity?

Myung Keun Choi  
Gyeong Lyeob Cho

A group of major advanced nations is abolishing death tax as it is being widely recognized that achieving equality of economic opportunities through death tax is nearly impossible in an global era when economic borders are gradually losing their meaning. This trend in policy change reflects the possibility that sustained imposition of irrational and burdensome death tax may hurt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the economy by reducing savings and hampering the accumulation of financial resources needed for investment. The change in the attitudes towards death tax also reflect the fact that it could promote outflow of national wealth in an era of capital liberalization, even providing incentives to the wealthy to change its nationality to those countries where death tax is either low or nonexistent.

The aim of this study is twofold. First, it reviews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current death tax system in Korea while focusing on its institutional aspects. Second, using an overlapping generation model, it analyzes the effects of death

tax on the individual welfare of different components of the social strata and the macroeconomic variables such as consumption, savings, investment and GDP.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reducing the death tax rate by 40% from its current level raises GDP by 0.06%, the welfare of those with expected inheritance by between 0.1378 trillion and 0.1847 trillion korean won on yearly average, and the welfare of those without expected inheritance by between 307 hundred million and 0.4837 trillion korean won. In sum, it is expected that total social welfare would rise by between 0.1685 trillion and 0.6683 trillion korean won. In an opposite scenario, strengthening the death tax system is shown to result in a downward equalization where the welfare of both of those with and without expected inheritance is reduced due to economic inefficiency. The analysis shows that the welfare of the low-income class and equality of income distribution improve through death tax increases only if the elasticity of substitution is abnormally high.

Abolishing death tax cannot be a practical policy alternative as we do not yet have a satisfactory capital gains tax system in place and incorporated into the income tax framework to block potential tax evasion it may cause. Hence improvement in the social infrastructure regarding taxation such as real-name accounting needs to be made to enhance transparency of economic transactions before abolishing death tax and substituting it with capital gains tax. Until tax-related infrastructure is soundly established, the burden of death tax should be mitigated through lowering the rates and improving

the underlying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In addition, it is recommended that the death tax rate be lowered from its current level of 50% to the level of the capital gains tax. Furthermore, institutional conversion to a form of acquisition tax, in line with the ability-to-pay principle and the policy of suppressing concentration of wealth, is required. A conversion to schedule system from the all-inclusive principle that violates the principle of no tax without law and permits tax authorities liberal discretion is also needed. Further, this process should be accompanied by a reform of irrational legal provisions in the current institutional framework. It is logical to replace gift tax on gains from buying low and selling high with income tax. A gift tax on scalp arising when stocks get listed needs to be replaced by capital gains tax. An additional gift tax on profits earned due to the rise in the asset's value occurring after the initial gift tax is imposed should be replaced with capital gains tax. Finally, income from a gratuitous real estate should be imposed not a gift tax but income tax.